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2006. 12

김 진·원종학

서 언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개인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대 간 자산이전의 규모 및 행태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주요 과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GDP 대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속과 (자녀세대에게의 생전)증여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 행태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부(wealth)의 무상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경제학적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의 무상이전이 다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엄밀히 분석하여 상속·증여세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힌 후에,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상속·증여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의 규모 및 비중, 법정한계세율 및 유효평균세율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현황 파악은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거론될 경제변수들을 도출하는 데에 유익하다. 경제모형에서 증여와 상속은 부모세대의 소비재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재화의 가격을 계산할 때에 증여·상속세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모형의 결론은 균형에서 증여·상속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다기간에 걸친 증여·상속세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상속·증여과세 현황을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세수,

세부담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속증여행위 현황을 자산형태별 이전자산규모, 생전증여 비율, 납세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최근 도입된 증여세 포괄주의,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고령화 및 자본집적화로 인한 기업상속 및 개인상속에 대한 현안을 주요 이슈별로 살펴본다. 또한 미국, 일본, 기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상속·증여과세의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에 미치는 시사점을 점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김진원 중학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 토론자, 익명의 논평자 등 본 연구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밖에 본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원고정리와 교정에 도움을 준 김정현 주임연구원, 최미영 연구조원, 그리고 홍보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2006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고령화, 세계화, 선진화의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환경에서 올바른 상속·증여세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 세계화, 선진화에 대비한 올바른 상속·증여세제도를 위한 기본연구 틀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상속·증여세가 세대 간 부(wealth)의 무상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경제학적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의 무상이전이 다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엄밀히 분석하여 상속·증여세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힌 후에,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이론 및 실증분석 전에, 상속·증여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의 규모 및 비중, 법정한계세율 및 유효평균세율을 중점으로 파악하였고,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거론될 경제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상정한 경제모형에서 증여와 상속은 부모세대의 소비재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재화의 가격을 계산할 때에 증여·상속세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모형의 결론은 균형에서 증여·상속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다기간에 걸친 증여·상속세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모든 조세체계가 그러하듯이, 상속·증여세도 국가 간 과세 근거 및 과세방식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였다. 또한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법인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 그리고 다른 변형들에 대한 입장을 각 나라들이 상이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자산이전모형을 통한 분석을 보완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부가 현금인 경우를 상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모형을 통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물론 각종 자산이나 부를 도입하더라도 증여와 상속의 기회비용으로서의 가격이 다기간에 걸친 증여의 균형수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증여세가 증여나 상속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은 현실 정책에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증여·상속이 다기간에 걸친 의사결정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세수에 대한 효과에서 단기효과만이 아니라 장기효과를 중첩적으로 고찰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1975년 이후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수의 증여가격 탄력성이 단기에는 15.5의 높은 수치를, 장기에는 5.6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법정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시장에서의 증여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단·장기 탄력성의 비교 결과는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반응이 매우 탄력적이고 또한 장기적 영향을 줄을 나타낸다.

둘째, 상속과 증여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증여·상속의 이전 비중에 각종 증여·상속의 재산공제의 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각종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부의 무상이전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상속세수보다 증여세수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는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동일한 근거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상속·증여부문의 조세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포괄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정책은 다른 주요 세목의 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를 결정하는 세목에 대해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의 하나로서 상속·증여세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 세대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세대의 자산관리 양상이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각종 공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부모세대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비와 자녀세대로의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가 부의 이전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주요 변화를 인지하면서 상속·증여 부문의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의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학계에서 제기된 개선방향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중간에 위치한 상속·증여세의 특징 때문에 소득과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실효세율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 행위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 설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유산과세형을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장형 과세의 하나로 실행된 기업상속제도의 공제액 인상, 연부연납기간의 연장, 그리고 한시성의 제거 등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으로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유산취득세형과 유산세형, 그리고 많은 변형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세부담지표를 계산하고 자산이전행위의 세부담 탄력성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탄력성을, 장기적으로는 더 낮은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차이점이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관측된 연도의 거시경제적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지는 차후의 연구로 돌린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상이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데에 유의할 몇 가지 점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부담이 다른 국가

들에 비해 높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전 이전비율은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볼 때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구조는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유의하여 실효세율구조를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조세구조(tax mix)가 향후 완성된다면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의 회박성과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환경의 급변성은 향후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산세형의 유지 또는 유산취득세형으로의 변화, 상속세의 완화 방안으로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증여세와 소득과세의 형평성, 생애에 걸친 과세체계의 확립 등 많은 사안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과세자료의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연방정부와 재계의 득과 실을 계산하고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상속·증여과세의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7
II. 현황	21
1. 주요 현안	21
가. 개요	21
나. 상속·증여세 완화논쟁	25
다. 상속·증여 분석 논점	27
2. 상속·증여세 현황	29
가. 과세체계	29
나. 세수	36
다. 세부담 지표	39
3. 상속·증여제도 변화	41
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41
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47
III. 해외사례	51
1. 미국	51
가. 과세체계	52
나. 경제환경의 변화와 상속·증여세 변화	62
2. 일본	69
가. 일본 상속세법의 역사 및 과세체계	70
나. 상속세	75
다. 증여세	93

라. 경제 환경의 변화와 상속·증여세 변화	97
3. 기타 주요국가 현황	102
가. 개요	102
나. 영국	104
다. 독일	110
라. 프랑스	117
마. 캐나다	123
4. 정책적 시사점	126
IV. 이론 및 분석	129
1. 기존 연구	129
가. 외국문헌	129
나. 국내문헌	130
2. 상속·증여행위	132
가. 자산형태별 이전자산규모	132
나. 생전증여 비율	134
3. 자산이전모형	136
4. 부의 이전에 대한 실증분석	140
가. 자료구축 및 모형설계	140
나. 증여세수 결정요인	141
다. 생전증여비율 결정요인	149
라. 일본 실증분석	153
5. 시사점 및 한계	157
V. 결 론	159
참고문헌	161

표 목 차

<표 II- 1> 각종 상속재산공제	31
<표 II- 2> 각종 증여재산공제	32
<표 II- 3>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	33
<표 III- 1> 유산·증여 관련 잠정세 세율구조	56
<표 III- 2>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에 따른 면세점 및 세율 조정	57
<표 III- 3> 유산·증여세의 연도별 표준세액공제 및 실질적인 면세 금액	58
<표 III- 4> 통합세액공제(공제한도)	64
<표 III- 5> 유산세 신고한도	66
<표 III- 6> 연방이전세 법정한계세율 구조	66
<표 III- 7> 상속재산 과표구간별 세율과 공제액	85
<표 III- 8> 과세상황의 추이	88
<표 III- 9> 기초공제액의 추이	90
<표 III-10> 증여세의 과세가격 등급별 세율 및 공제액	95
<표 III-11> 사업승계에 관한 세제	100
<표 III-12> 증여 이후 생존기간에 따른 체감공제 비율	107
<표 III-13> 인적공제 한도	112
<표 III-14> 특별생계비공제 한도	113
<표 III-15> 차등세율	114
<표 III-16> 배우자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	120
<표 III-17> 직계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	120
<표 III-18> 방계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	121

<표 IV- 1> 증여세수 추정 결과	146
<표 IV- 2>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	147
<표 IV- 3> 미국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1933~1998년)	148
<표 IV-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151
<표 IV- 5> 상대적 증여비율 추정 결과	152
<표 IV- 6> 증여세수 추정 결과	154
<표 IV- 7>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	155
<표 IV- 8> 상대적 증여비율 추정 결과	156

그림 목차

[그림 II- 1] 상속세 과세체계	34
[그림 II- 2] 증여세 과세체계	35
[그림 II- 3] 상속·증여세 세수추이	37
[그림 II- 4] 상속·증여세의 조세총액 대비 세수비중	37
[그림 II- 5] 상속·증여세의 GDP 대비 세수비중	38
[그림 II- 6] 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수입 비중의 국가별 비교	39
[그림 II- 7] 상속·증여세의 최고법정세율 추이	40
[그림 II- 8] 상속·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추이	41
[그림 III- 1] 유산세 산정방식	54
[그림 III- 2] 증여세 산정방식	61
[그림 III- 3] 미국의 상속·증여 세수 추이	68
[그림 III- 4] 미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비중 추이	68
[그림 III- 5] 상속세 기본구조	76
[그림 III- 6] 일본의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추이 (1970~2003년)	87
[그림 III- 7]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세액계산	98
[그림 III- 8] 영국의 상속세 세수 추이	108
[그림 III- 9] 영국의 GDP 대비 상속세 세수비중 추이	109
[그림 III-10] 독일의 상속·증여 세수 추이	116
[그림 III-11] 독일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비중 추이	116
[그림 III-12] 프랑스의 상속·증여 세수 추이	122
[그림 III-13] 프랑스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비중 추이	122
[그림 IV- 1] 생전증여(1933~1998년)	130

[그림 IV- 2]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1996~2004년) ..	132
[그림 IV- 3]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1970~2004년) ..	133
[그림 IV- 4] 연도별 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1996~2004년) ..	133
[그림 IV- 5] 연도별 재산종류별 이전재산가액(1996~2004년) ..	134
[그림 IV- 6] 재산가액: 상속, 증여, 합계	134
[그림 IV- 7] 사전증여비율	135
[그림 IV- 8] 재산가액: 상속, 증여, 합계(1996~2004년)	135
[그림 IV- 9] 사전증여비율(1996~2004년)	136
[그림 IV-10] 증여 및 상속세 평균유효세율	144
[그림 IV-11] 상대적 증여비율과 설명변수 간의 추이 비교	151

I. 서론

‘부(wealth)의 세대간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일찍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부의 세대간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로는 크게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증여세(gift tax)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에¹⁾ 의한 재산취득에, 증여세는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에 부과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수증자가²⁾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wealth)의 자녀에게로의 무상이전을 고려하는 부모의 경제행위, 즉 증여와 상속을 무상이전의 이전시기들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부의 무상이전은 다기간에 걸친 수익과 비용을 포함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먼저 무상이전을 상속을 통해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통해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 번에 걸친 증여가 가능하고 피상속인 즉 본인의 사망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부(wealth)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은 위험과 다기간에 걸친 소유로 인해 자산 가치가 변동한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도입은 총괄적인 부의 이전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더 복

1)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일컫는다.

2) 증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잡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대 간 자산이전의 의사결정 행태가 변하고 있다. 소득 및 부의 성장으로 인해 자산보유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자산의 세대 간 이전시기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또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속과 (자녀 세대에게 생전)증여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 행태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다양화가 1990년대 이후 증여가 상속보다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생전증여(inter-vivo gifts)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하는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상속세의 실효성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세계화, 선진화의 시기에 올바른 상속·증여세 제도를 위한 기본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과세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다. 우리나라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2006년 세계개편안) 등을 도입하여 생전증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발굴하였으나 기초 연구의 부족으로 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세수가 2조원으로 적지 않으며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법제적인 측면이나 회계학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경제학적 시각의 총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경제학적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의 무상이전이 다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엄밀히 분석하여 상속·증여세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힌 후에,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상속·증여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의 규모 및 비중, 법정한계세율 및 유효평균세율을 중점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현황 파악은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거론될 경제변수들을 도출하는 데에 유익하다. 경제모형에서 증여와 상속은 부모세대의 소비재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재화의 가격을 계산할 때에 증여·상속세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모형의 결론은 균형에서 증여·상속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다기간에 걸친 증여·상속세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모든 조세체계가 그러하듯이, 상속·증여세도 국가 간 과세근거 및 과세방식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였다. 또한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법인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 그리고 다른 변형들에 대한 입장을 각 나라들이 상이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능한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자산이전모형을 통한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증여·상속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의 이전에 대한 몇 가지의 실증분석을 행한다. 세부담 등이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 세부담 변화 등이 증여세수, 상속세수, 상속·증여세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증여·상속의 세부담 비율이 증여·상속의 이전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일본의 경우도 살펴봄으로써 비교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상속·증여과세 현황을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세수, 세부담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속·증여행위 현황을 자산형태별 이전자산규모, 생전증여

비율, 납세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최근 도입된 증여세 포괄주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고령화 및 자본집적화로 인한 기업상속 및 개인상속에 대한 현안을 주요 이슈별로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미국, 일본, 기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상속·증여과세의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에 미치는 시사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자산이전모형을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단순의사결정모형을 소개하고 일반화를 위한 여러 모색을 시도하고 확장된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몇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다기간 분석이 향후 상속·증여 관련 조세정책의 적합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자 한다. 또한 자산이전모형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논한다. 마지막 제V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분석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밝힘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II. 현 황

본장에서는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현안, 상속증여세 현황, 그리고 최근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의 파악 및 분석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해외사례의 분석과 함께 본 연구의 중심인 제 IV장의 경제모형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장의 주요 현황에 대한 파악 및 분석은 완결적이지 않다.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고 대부분 회계학적 또는 법제적 연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요 논점과 그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 천착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단서로 활용될 수도 있다.

1. 주요 현안

가. 개요

개인의 사망에 기인한 상속 또는 생존자 간의 증여에 의하여 개인 간의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은 무상이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무상이전자가 이전하는 재산의 크기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유산세형(estate tax type)과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유산취득세형

(inheritance tax type)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산세형은 재산의 무상적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산취득세형에서는 재산의 무상적 취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형을 채택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대하여 피상속인(무상이전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전상속을 막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와의 통합세율인데,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의 30%를 할증한다.

다음으로 증여세는 수증자과세방식을 채택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동일한 수증자에 대한 분산증여를 통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누적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3억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3,000만원(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500만원), 기타의 친족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1,720명이고, 상속세액은 4,853억원으로서 전체 국세수입의 0.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의 세수는 8,297억원으로서 전체 국세수입의 0.79%를 차지하고 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정하는 방식으로서는 열거주의방식과 포괄주의방식이 있다. 종래에는 열거주의방식을 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 또는 거래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열거주의방식의 맹점을 이용한 증여세의 회피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2003년 말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즉,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나 거래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과세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제기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유산세형을 채택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피상속인(무상이전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산세형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의 집중의 분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유산세형은 현행의 상속제도 및 실태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유형의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재산의 이전이 늦어져 상속재산이 국민경제의 활력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태적으로 사장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셋째, 증여세와 소득과세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승계제도가 불비되어 조세회피가 이루어

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³⁾

상속·증여세제를 둘러싸고 있는 납세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세계적인 상속·증여세제의 완화 움직임과 인구고령화의 진전이다. 세계화 및 정보화의 진전, 국경을 초월한 거주지의 이전과 기업의 입지선택권의 확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장소와 생활의 본거지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산의 보유 및 운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및 정보화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상속·증여세제를 포함한 조세제도의 세계화 내지 국가 간의 조세제도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내에 기업·자본 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세여건을 제공하며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근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세계적인 흐름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시기를 평균연령의 연장기간만큼 지연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국민경제의 활력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태적으로 사장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제는 상속 또는 증여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의 실현과 부의 재분배기능의 강화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증여과세의 포괄주의 방식과 조세법률주의의 긴장을 해소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한 연구는 안경봉·정희선(2006)을 참조.

나. 상속·증여세 완화논쟁

상속·증여세를 완화하자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찬반론과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미국의 상속·증여세 한시적 완화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속·증여세 완화논쟁의 찬성론이 제기하는 근거의 하나는 외국의 경우 상속과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캐나다(1972년), 호주(1977년)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미국은 2010년에 상속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뉴질랜드(1992년),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시점에 상속·증여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고, 호주는 상속인·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과세를 개인소득세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소득창출시 소득세를 부담한 후 축적한 부의 이전에 또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로 이해한 것이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아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지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주가 기업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통해 기업주 개인재산으로 축적하게 되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으나, 주식이 분산된 상장기업은 지분율 기준(50%)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시적 상속세 납부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상속·증여세 완화논쟁의 반대론 또한 외국사례를 들고 있다. 즉,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히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은 2010년에 한해 상속세를 폐지하지만, 2011년부터는 2001년도 상속세 체계(최고세율 55% 적용)로 복귀되도록 입법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10~50%는 명목세율 기준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참고로, 미국은 18~46%, 일본은 10~50%, 독일은 7~50%, 프랑스는 5~60%의 누진세율 체계이고, 영국은 상속세는 40%, 증여세는 20%로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우리의 경우 30억원이므로 외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250만달러(24억원), 일본은 3억엔(24억원), 독일은 2,526만 5천유로(300억원), 프랑스는 170만유로(20억원)이다.

기업주가 기업이익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경우가 배당하는 경우보다 기업성장 속도가 훨씬 커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과거 상당수의 재벌그룹이 불법·편법적인 주식거래 등을 통해 상속세를 제대로 낸 경우가 거의 없었다. 기업의 경영권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영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 경영권이 승계되어야 한다.

미국의 상속세 영구폐지 법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1년 5월 26일 향후 10년간 1조 3,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감세법안에 따라 공제액은 연차적으로 높아지고 최고세율은 연차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 한해 상속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2001년도 상속세 체계(최고세율 55%)로 복귀한다.

이에 공화당 측에서 상속세 영구폐지를 추진하여 2005년 4월 13일 하원은 통과하였으나 2006년 6월 8일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2006년 6월 22일 하원에서 2011년 이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찬성 269, 반대 156으로 의결하여 상원으로 송부한 상황이다. 그 내용은 500만달러(부부는 1,000만달러)까지 상속세를 비과세하며, 2,500만달러까지 15%, 2,5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당초 상속세 영구폐지 법안보다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상속세 감면의 혜택이 일부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과 재정적자 문제 등을 감안하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 상속·증여 분석 논점

최근 제기된 상속·증여세 완화논쟁을 기점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속·증여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 경영권 방어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현황에 대한 오해가 많다. 마지막으로 상속보다는 생전증여를 유도하는 외국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세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제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가 시급하다.

상속·증여세는 세대 간 자산이전에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세로서의 상속·증여세와 법인과세의 분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는 재산권 상속에 관여하며 원칙상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기조는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과세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상속·증여세가 높은 세부담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상속·증여세수 및 평균유효세율의 추이를 볼

때 거시경제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경영권 승계를 고려할 때 개인 차원에서 세부담이 높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세수는 2004년 상속세 결정세액 9,540억원, 증여세 결정세액 1조 5,212억원, 총결정세액 2조 4,752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결정세액은 1989년부터 급증하여 1997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1년에 저점을 이루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GDP 대비 총결정세액 비중은 2001년에 0.17%, 2003년에 0.2%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2001년 비중이 프랑스 0.55%, 스위스 0.28%, 스웨덴 0.19%, 독일 0.15%인 것을 볼 때 그리 높지 않음을 나타낸다.

법정한계세율이 과세표준으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임에 비하여, 평균유효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2004년도 평균유효세율은 상속세 33.2%, 증여세 15%이다. 추세를 보면, 상속세는 2000~2003년 사이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증여세는 1997년 이후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의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로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 환경의 변화로는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의 종료 및 기업주도형 지속가능성장의 비전과 글로벌화로 인한 기업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지배구조의 주된 변화는 대주주 지분율의 하락이며,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의 약화, 오너의 고령화, 순환출자 등의 제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승계와 재산의 상속이 일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자산과 오너의 재산이 일치하기 때문이며, 최근 이루어진 가업상속제도로 가업승계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가업상속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지만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과 생전증여에 대한 인식 및 상속 설계에 대한 이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승계, 경영권 방어, 재산의 상속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한다. 먼저 경영권 방어에 대해 여러 가지 기제가 논의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경영권 승계를 상속·증여세제하에서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가 경영권 방어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근저에 있는 경영권 승계와 투자감소 및 성장둔화 억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의 설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또한 상속보다 (생전) 증여가 유리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선진국의 추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접경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또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우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율은 소득과세-재산과세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결정된다. 또한 소득과세로의 이전은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보유의 다각화, 가족구조의 변화,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대기업 오너들의 고령화 등의 제 요인에 의해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제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상속·증여세 현황

가. 과세체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 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

세이다. 상속세는 상속 및 유증의 경우에 부과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된다. 본 소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그 유사점을 살펴보고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이 존재함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제적 변수들을 도출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과세표준까지 정리하면,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을 합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고,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가액을 더한 후 증여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법정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두 세금이 유사한 과세체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의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즉 ‘재차증여가액’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이에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나 일괄공제액 중의 하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들 수 있다. 각종 상속공제에 대하여 쉽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각종 상속재산공제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①기초공제		2억원	
②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금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③일괄공제		5억원	
④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이하 -2000만원~1억만 -1억원 초과	순금융계산 = (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⑦재해손실공제		신고기간 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1. ① 기초공제 + 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③ 일괄공제 중 선택
 2. 납세의무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2억원)를 제외한 상속공제의 적용에서 배제

상속세 과세표준이 주어지면 과세구간에 따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할증세액을 첨가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에 연부연납, 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상속세 결정세액을 들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의 증여재산에 증여의제 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불산입재산을 차감한 후 다시 채무를 빼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을 더하고 인적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각종 증여공제를 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한다. 증여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들 수 있다. 각종 증여공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각종 증여재산공제

항목	공제내용	비고
배우자공제	3억원	모든 경우 10년간 공제금액임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를 언급하면서 상속·증여세가 그것들 다음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⁴⁾ 또한 상속·증여세의 세율구조 또한 소득세 등과 같이 누진구조를 갖는다. 물론 과세구간들이 다른 세목들과 상이하다. 1996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구간이 상이하였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동일한 한계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이 작았다. 따라서 동일한 액수를 가지고 상속과 증여를 비교 선택하는 의사결정자에게

4) 동법 제 2조.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증여가 상속보다 더 조세비용이 작았다고 할 수 있었다.

1997년부터는 과세구간과 세율이 단일화되어 법정세율이 같게 되었다. 따라서 결정세액 전체를 과세표준 전체로 나눈 평균유효세율이 중요하게 되었다.

2000년의 경우 최대 과세구간에 대한 임계치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정세율 기준의 세부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율 및 과세구간을 포함하는 법정세율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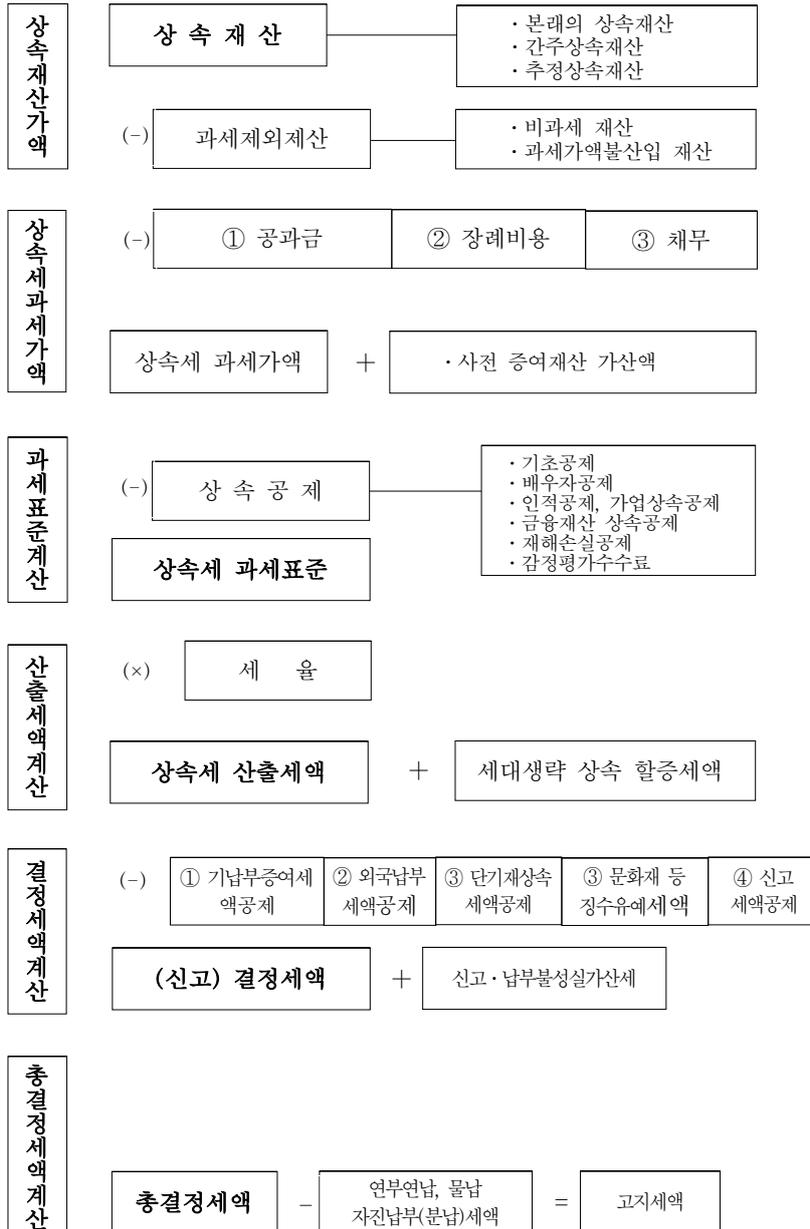
<표 II-3>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

1996.12.31 이전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상속세>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50억원 이하 40% · 50억원 초과 45%	
5천만원 이하	10%		
2억5천만원 "	20%		
5억5천만원 "	30%		
5억5천만원 초과	40%		
<증여세>			
2천만원 이하	10%		
1억5천만원 이하	2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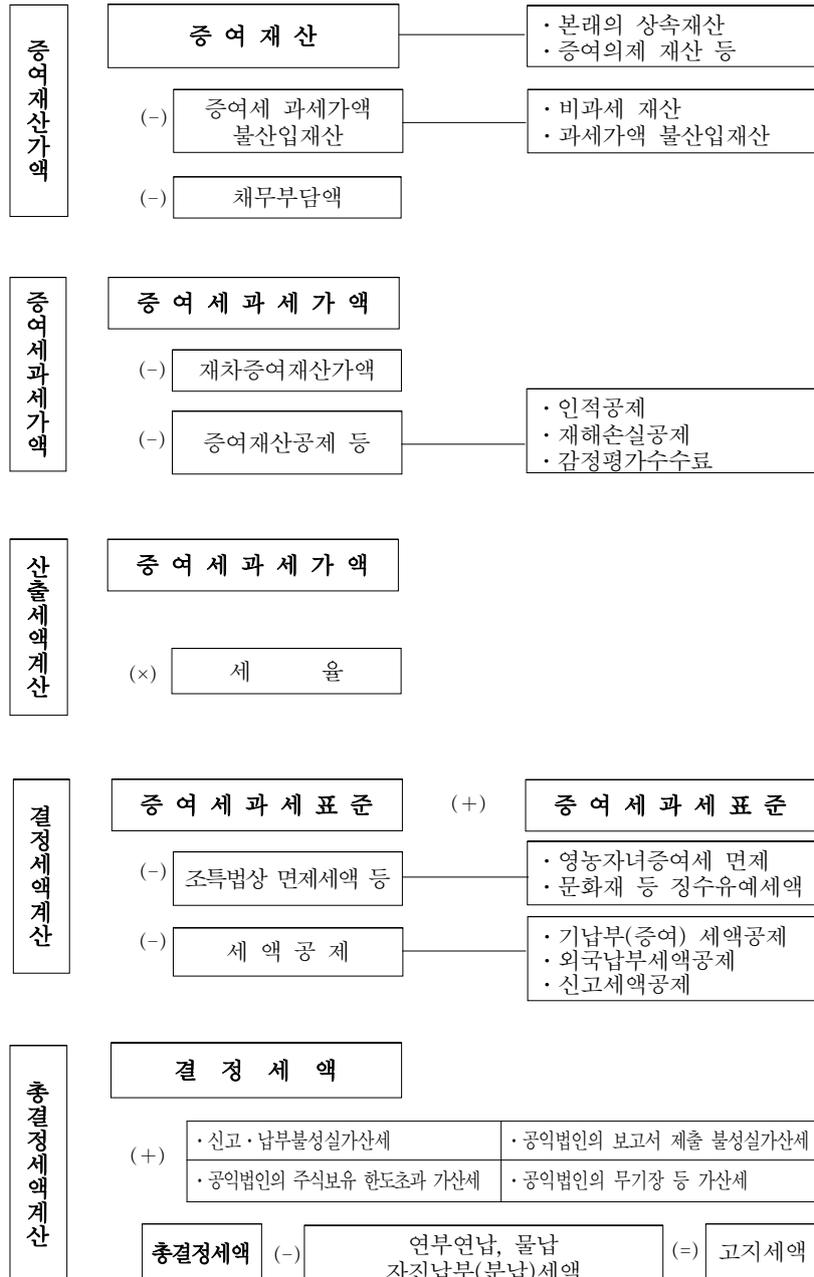
주: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세대생략 상속·증여시 30% 할증 과세

1996년 이전에는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과세구간의 임계치가 컸기 때문에 같은 법정한계세율을 갖더라도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유리하였다. 같은 금액의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한계세율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림 II-1] 상속세 과세체계



[그림 II-2] 증여세 과세체계



2000년 최상위 과세구간의 최저임계치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됨으로써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기회 부족의 위험을 세원확대로 보완하고자 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계치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는 1997년부터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상이하다.

다음의 그림들은 상속세 과세체계와 증여세 과세체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유사점을 볼 수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에서 가족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 있어 민법의 상속권에 대한 실행 구실을 상속세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여세에는 없는 세대생략 상속 할증제도가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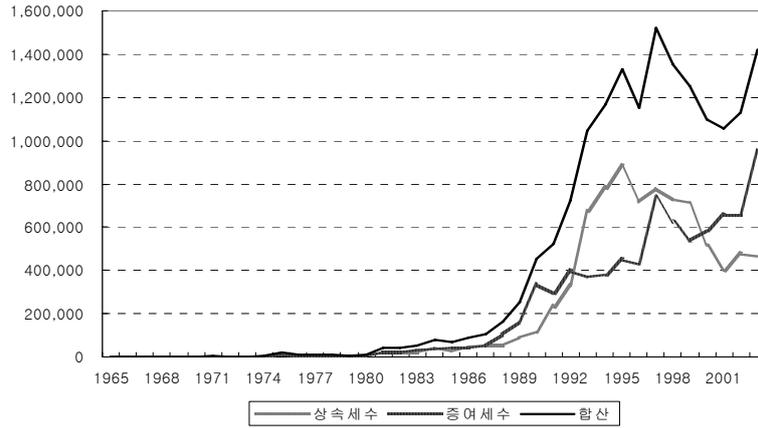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II-3]은 상속세수, 증여세수, 합산의 시간적 추이를 나타낸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는 1980년대 초기까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물론 경상가격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지만 실질가격으로 계산하여도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 정점을 이루었고 하강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를 1995년 이후로 관찰하면 세수의 비중이 상속세에서 증여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는 199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증여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II-3] 상속·증여세 세수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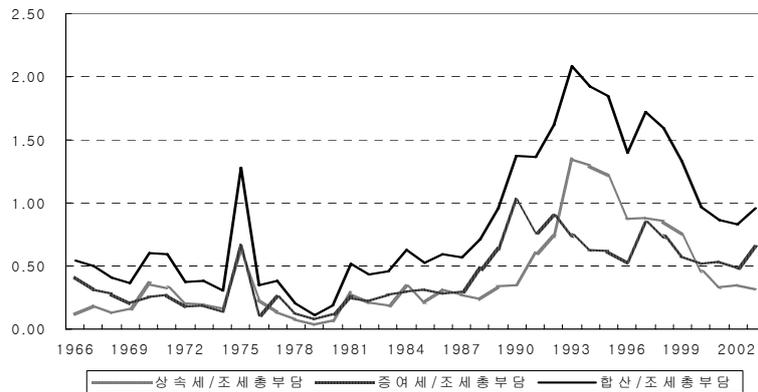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또한 조세총액 대비 세수비중과 GDP대비 세수비중을 살펴보아도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비중을 살펴보면, 조세총액 대비 세수비중은 최고 2%, 현재 1%이고 GDP 대비 세수비중은 최고 0.35%, 현재 0.2%이다.

[그림 II-4] 상속·증여세의 조세총액 대비 세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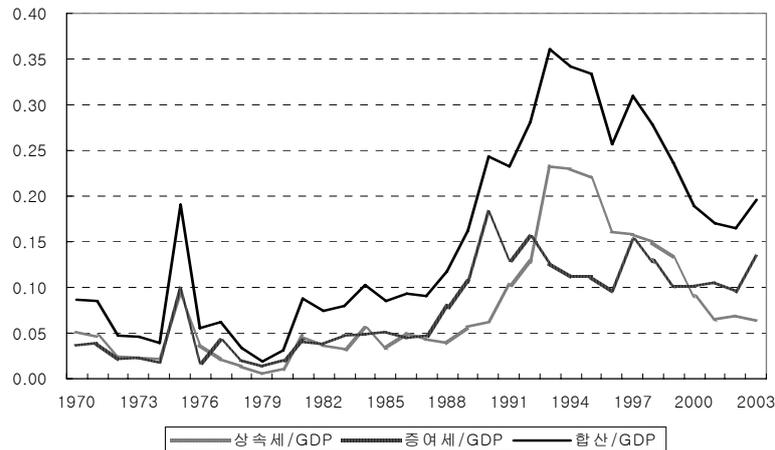
(단위: %)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중은 [그림 II-5]에서 보듯이 1995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1975년에 그 비중이 0.2%를 나타낸 것이 이례적이었지만, 1980년부터는 하나의 양상을 띤다. 즉, 199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정점인 0.36%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0.2%로 나타났다.

[그림 II-5] 상속·증여세의 GDP 대비 세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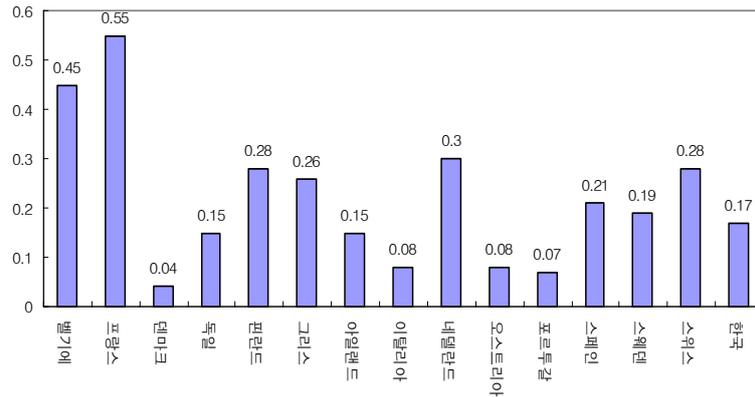
(단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GDP 대비 세수비중을 유럽의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6]과 같다.

2001년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0.17%이었다. 최근 늘어나서 0.2% 정도이다. 유럽국가의 경우 2001년도에 덴마크가 0.04%, 포르투갈이 0.07%로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벨기에가 0.45%, 프랑스가 0.55%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독일이 0.15%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그림 II-6] 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수입 비중의 국가별 비교
 기준년도: 2001년, (단위: %)



다. 세부담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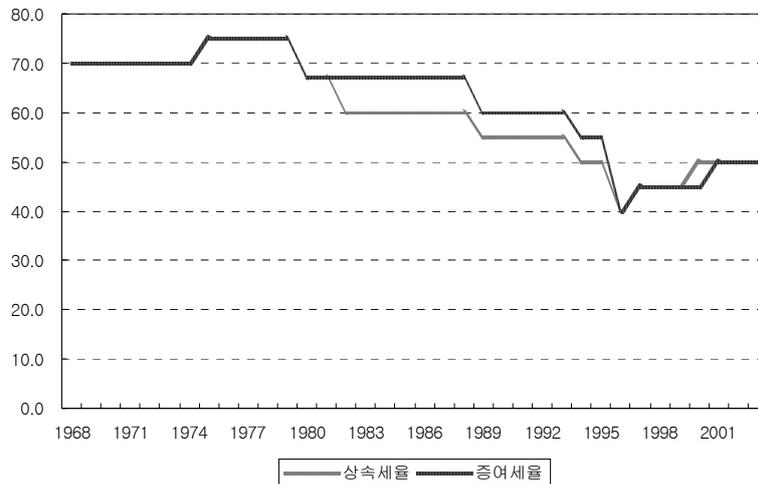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부담 지표로 적어도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정최고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유효세율이다. 법정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주어진 구간 한계세율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누진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가장 높은 법정세율은 가장 높은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다. 1981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법정최고세율은 변동은 있었지만 동일하였다. 1995년까지 증여세의 법정최고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았다. 이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변동은 하지만 동일한 법정최고세율을 나타낸다. 단, 최고 과표구간의 저점을 낮추면서 시행된 법정최고세율의 인상이 증여세가 1년 늦게 2001년에 이루어져, 2000년의 경우 상속세의 법정최고세율이 증여세보다 높게 되는 반전이 한번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1년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간과 법정세율은 동일하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최고법정세율은 대체로 감소하였고 최

근에는 50%를 유지하여 다른 나라들의 최고법정세율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국가들에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법정세율보다 평균세부담을 직접 나타내는 평균유효세율을 봄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그림 II-7] 상속·증여세의 최고법정세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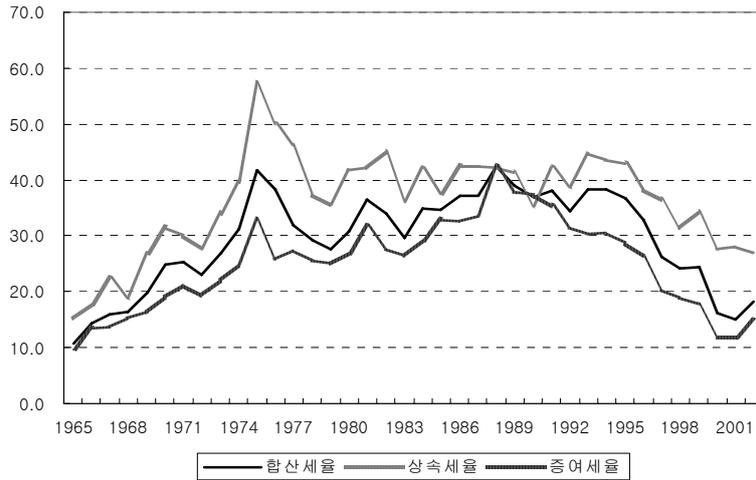


평균유효세율은 과세표준을 결정세액으로 나눈 평균치이다. 아래의 그림은 평균유효세율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상속세, 증여세, 합계의 세 가지 흐름이 있다. 대체로 상속세의 평균유효세율이 증여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재차증여재산가액은 상속의 대체재로서의 증여를 누적하여 계산하여야만 누진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1998년까지는 상속이전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의 합이었는데, 1999년부터는 상속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의 합이다. 이 외에도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세부담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II-8] 상속·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추이

(단위: %)



3. 상속·증여제도 변화

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30일을 기해 포괄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의 적용대상 방식을 전환하였다.

상속증여행위는 가족 간에 행해지는 자산의 무상이전이기에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자산이전행위의 포착이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자산이전행위가 상속증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 즉 세율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포함되는 자산이전행위를 일일이 규정해주는 열거주의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궁극적인 결과가 자산이전행위에 해당하면 의제하는 포괄주의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괄주의방식의 주창자로서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는 상

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거액의 재산을 자손에게 세습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제를 어떻게 개혁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상속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법제적 논거라 할 수 있다. 상속세의 본질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이상, 상속세는 필연적으로 증여세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본질이 부의 세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는 부를 세습시키는 형식과 관계없이 부의 세습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세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부각하여 변칙증여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회사를 이용한 변칙증여나 다른 편법으로 조세회피를 통해 부를 세습해 왔음을 적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GDP 대비 세수비중이 1% 안팎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견주어 낮은 편이 아님을 기술하였다. 또한 2세, 3세에 대한 재벌의 변칙상속이 계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막대한 부를 세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제기하였다.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막대한 부를 세습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법의 맹점이 어떻게 발

생한 것인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혁과 존재 근거, 특히 우리 현행법이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된 연혁을 분석하고,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거하여 상속세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포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함을 논증한다. 또한 새로운 입법의 틀과 기본방향을 모색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첫째는 입법재량의 제약조건인 헌법적 틀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하여 일반론으로서 세법의 입법이 어떠한 헌법적 틀을 준수해야 하는가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고찰하고 특히 상속·증여세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의 큰 윤곽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를 위해 변칙증여의 각 쟁점별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문이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였다. 뒤이어 각 쟁점별로 구성된 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조문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립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최명근(2006)은 포괄적 상속과세는 과세권력의 남용을 초래하며 상속과세 강화는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기 때문에 선진 주요국처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러 선진 주요국의 경우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실행하였다. 캐나다는 197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하여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였다. 호주는 1977년에,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하였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과세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면서까지 시행되는 상속과세의 무조건적 강화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가진 계층의 부를 조세로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것이 지고의 선인 것처럼 인식하는 잘못에 대한 반성

이 필요하고, 축적된 민부의 규모가 방대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상속과세정책에 대해 회의를 크게 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상속과세의 폐지 내지 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속과세의 부의 집중 억제기능에 대한 회의를 토로하였고 축적된 부에 대한 상속과세는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2중과세임을 주장하였다.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여 경제거래의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하며 국내적 관점만으로는 접근을 경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상속과세제도의 여러 가지 결함을 주의 깊게 검증하고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차선책의 강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최명근(2006)은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헌법이 천명한 재산권 보장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기 때문에 과세권자에게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기관의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적기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상의 예측가능성을 저감시키고 민간부분 경제주체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도 기술하였다. 조세법 규정의 모호성은 과세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포괄주의는 과세권력의 남용을 자초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하위법규에 과세대상 등을 위임하는 입법을 가속화시켜 과세범위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신축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과세권자에게 폭넓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최명근(2006)은 상속·증여과세의 기본방향으로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전환하고 조세인프라를 개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먼저 조세인프라를 개선한 후에 캐나다와 같이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상세하게 서술하자면, 첫째 포괄주의는 폐지, 아니면 최소한 항목별 포괄주의 수준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권자의 권력남용 방지를 통해 조세법률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이득과세의 불비로 인해 상속과세를 당장 폐지하기 어려움을 적기하였다.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중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복잡하기만 하고 과세대상이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고,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얘기다.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실명거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과세를 폐지하면 유가증권 가치증분에 대해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속과세 개혁은 과세유형을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수준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하였다. 현행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차익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그 차익이 1억원인 경우 저가양수·고가양도라고 인정하여 그 시가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시가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문의 삭제가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는 최소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과세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자본이득세 포함)로 대체해야 조세논리와 부합된다는 것이다.

넷째,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

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 안에 그 주식을 상장할 때 발생한 시세차익을 당초 증여행위의 연장으로 인정하여 그 시세차익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주식양도소득세)로 대체해도 세원의 일실이 없고 수증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과세시점이 다소 늦어질 따름이라는 주장이다.

다섯째,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현재는 미성년자,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유상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사유로 인해 증가된 재산가치는 이를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 개발사업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과세로 대체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재산의 개발이익을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섯째,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무상 사용이익을 무상사용자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여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일곱째,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명의신탁을 증여의

제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이 행해진 경우 그 대상 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명의신탁행위를 조세법처벌법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유형의 하나로 규정, 명의신탁자는 조세포탈로 처벌하고, 명의수탁자는 조세위해범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벌금형 또는 행정과태료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명의신탁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자는 명의신탁자인데 이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의 방조자격인 명의수탁자에게 가혹한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세금납부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에게 창업자금 용도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 한도 내에서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상속시 당초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서 정산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시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성장지향적 과세의 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일본이나 독일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는 면에서 현대적 과세방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현행 증여제도와 차이점을 보면, 현행 규정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반하

여,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경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 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피하게 하기 위해 공제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도입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증여 등에 비해 혜택이 과도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기준으로 기존 증여세 부담과의 차액은 1억 8,100만원이며,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차액이 7억 7,8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증여 없이 상속되었을 때의 상속세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창업자금’이 본질적으로 ‘증여’에 속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세부담의 차액이 과도하게 커서 기존 증여세제도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과도한 증여세부담 때문에 묶여있는 자금을 조기에 끌어내기 위한 것이기에 그 정도의 혜택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도, 현행 증여세 부담과의 차액이 30억원을 기준으로 7억 7,8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또 10년, 20년 동안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 제도는 고액자산가 등 소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편법 상속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

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되지는 않는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상속 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 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의 범위에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현금, 채권, 상장주식 등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사후관리를 통해 10년간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금을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내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제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

친 정보 보관 및 추적이 가능하고, 위반시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및 대상 금액의 한정, 상속시 정산제도 등 여러 납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반드시 소수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현재의 변칙증여를 합법적인 상속·증여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시장에 부여하므로 건전한 경제행위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Ⅲ.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타인에게 생존시 혹은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전세(transfer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는 연방정부 차원의 유산세(estate tax),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및 주정부 차원의 상속세(inheritance tax)로 구분된다. 이 중 유산세는 부모가 연방정부에, 상속세는 상속인인 자녀가 주정부에 납부한다. 한편 증여세는 연방세로 분류되지만 일부 주에서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산세는 1916년에, 증여세는 1932년에 영구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관련 규정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ubtitle B Chapter 11~13에 명문화되어 있다. 도입될 당시에는 각자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1976년 세법개정을 통해 유산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면세범위가 통일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증여를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후 1981년에는 최고세율이 70%에서 50%로 인하되고 면세범위도 확대되었다.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의 법 개정으로 2009년까지 유산세와 증여세의 단계적인 면세점 인상과 세율 인하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세가 폐지되고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소득세와 같은 35%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이 마련되지 못하면 2011년에는 다시 2001년 이

전의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상속세를 사망세로 부르며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으나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이 입법을 추진해 온 상속세 감면법안이 지난 6월 22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8월 4일 상원에서 표결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면세점을 현행 개인 200만달러, 부부합산 400만달러에서 개인 500만달러, 부부합산 1,000만달러로 인상하고, 1,000만~2,500만달러는 자본이득세율에 따라 과세하며, 2,5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상속세 감면이 연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가. 과세체계

1) 유산세(estate tax)

유산세는 고인으로부터 자산이 이전되는 특권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사망 당시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서 자산 자체에 대한 세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유산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된다. 유산집행인은 유언에 따라 지명된 자로서 상속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이 배분될 때까지 상속자산을 관리하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산을 배분하는 책임을 진다. 유언이 없을 때에는 유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유산집행인이나 유산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유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2006년 기준으로 유산집행인은 총유산, 과세대상 증여 및 기타

공제액의 사망 당시 가치가 200만달러를 초과하면 Form 706에 의해 유산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유산세는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국의 허가를 받아 최대 12개월간 납세를 연기할 수 있다.

유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나 대체평가방식(alternate valuation method)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 유산집행인이 대체평가방식을 선택하면 모든 자산은 사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자산의 처분이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단, 모든 자산은 같은 방식(또는 날짜)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제약은 받는다. 예외적으로 조정된 총유산의 최소 50%가 농장이나 비상장사업에 이용되는 부동산 또는 개인자산이고 그 중 최소 25%가 부동산인 경우에 공정한 시장가치 대신 실제 사용가치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용가치 평가방식(special use valuation)이 적용되기도 한다.

유산세는 생전 증여를 유산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간주하여 세액 계산시 유산에다 생전에 행해진 증여를 모두 다시 가산, 그 총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초과누진세율을 곱해 잠정 유산세를 구하고 다시 생전 증여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하는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유산세는 증여세와 연계되어 전체 부의 이전에 대해 일관된 과세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III-1]과 같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총유산은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권리한도 내에 속하는 국내외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유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미국 내외의 물적·인적·유무형 자

산, 공유 및 공동 자산, 연부금, 일부 보험수혜까지 포함되며, 사망하기 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중 몇 가지도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그렇지만 유산신탁기금에 양도된 자산은 제외된다.

[그림 III-1] 유산세 산정방식

총유산(gross estate)
- 공제(부채, 장례비, 유산관리비 등)
= 조정된 총유산(adjusted gross estate)
-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 기부금공제
=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
+ 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
= 유산세 과표(estate tax base)
* 통합이전세율
= 잠정 유산세(tentative tax)
- 1976년 이후 증여에 대한 조정된 증여세
- 표준세액공제(applicable tax credit)
- 기타 세액공제(주정부 상속세액, 사전양도 및 해외세액공제 등)
= 유산세 납부의무 금액

이렇게 총유산을 확정한 다음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유산을 산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례비, 유산관리비, 부채 및 이자, 미납세금, 우발손실, 사법 수수료, 기부금 그리고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은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유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장례비는 지방정부가 법으로 허용하는 한 필요 한도를 초과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유산관리비의 경우 유산집행인이 자산의 수집, 부채정리 및 자산분배 등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실제 지불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유산 수혜자의 편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예: 주택매매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 공제는 상속지를 관할하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이 허용된 채무 및 고인 사망시까지의 이자에 대해 적용된다. 단, 사망 당시 고인의 개인적 채무로 한정된다. 이외에도 유산세를 제외한 연방·주·지방정부의 모든 미납세금도 공제 가능하며, 유산의 관리기간중에 발생한 화재, 절도 등 급작스런 상태로 인한 우발손실 역시 보험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화재단, 교육기관 등 자선단체 및 비영리기관에 증여한 자산 즉, 기부금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소득세 계산시 공제 혜택을 누리며 사후에는 유산세 계산시 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공제 또한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 고인의 유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될 때 총유산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산을 유산세 과표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일부 종신물권(life estate)이나 연부금 등 시한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한도가 없다. 미국 국적자이면 기본적으로 전액 공제되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적격국내신탁을 통한 상속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공제를 불허하고 있다.

유산세 과세표준은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공제항목들을 총유산에서 차감하여 구한 과세대상 유산에다 총유산에 포함된 증여를 제외한 1976년 이후 이루어진 모든 증여를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이다. 이 때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그 대신 잠정 유산세에서 해당 증여에 대해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있다⁵⁾.

5) 이때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사망 당시의 세율을 증여가액에 곱하여 산정되므로 사망 시점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로 증여세를 사전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다음 단계는 유산세 과세표준에 통합이전세율을 곱하여 잠정 유산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2001년 법 개정 이전의 유산·증여 관련 잠정세 세율구조는 <표 III-1>과 같으며, 최저 18%에서 최고 50%까지 1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잠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유산세에 또 다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유산세가 구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산세의 실효세율은 <표 III-1>에 제시된 명목세율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표 III-1> 유산·증여 관련 잠정세 세율구조

(단위 : 달러, %)

과세표준구간	최소세액	세율
up to 10,000	-	18
10,001 ~ 20,000	1,800	20
20,001 ~ 40,000	3,800	22
40,001 ~ 60,000	8,200	24
60,001 ~ 80,000	13,000	26
80,001 ~ 100,000	18,200	28
100,001 ~ 150,000	23,800	30
150,001 ~ 250,000	38,800	32
250,001 ~ 500,000	70,800	34
500,001 ~ 750,000	155,800	37
750,001 ~ 1,000,000	248,300	39
1,000,001 ~ 1,250,000	345,800	41
1,250,001 ~ 1,500,000	448,300	43
1,500,001 ~ 2,000,000	555,800	45
2,000,001 ~ 2,500,000	780,800	49
over 2,500,000	1,025,800	50

현재 유산세의 세부담은 <표 III-1>보다 크게 완화된 상태이다. 2001년 5월 26일 의회를 통과하고 6월 8일 부시대통령이 서명·공포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면세점 인상과 세율 인하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계속 세율을 낮추어 2007년에 45%까지 하향조정한 뒤 2010년이 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어 후속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다시 기존의 통합 이전 세율로 복귀해야 한다.

<표 III-2>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에 따른 면세점 및 세율 조정

연도	비과세한도	최고세율(%)
2002	1.0	50
2003	1.0	49
2004	1.5	48
2005	1.5	47
2006	2.0	46
2007	2.0	45
2008	2.0	45
2009	3.5	45

마지막으로 1976년 이후의 증여에 대해 조정된 증여세와 표준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를 잠정 유산세에서 빼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유산세액이 도출된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증여세액 공제는 1976년 이후 증여한 자산이 고인의 총유산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 또는 그 자산을 유산에 포함시킬

으로 인해 증가된 유산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허용된다. 표준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연도별 표준세액공제 및 실질적인 면세 금액의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유산·증여세의 연도별 표준세액공제 및 실질적인 면세 금액

연도	표준세액공제 금액	면세 금액
1982	62,800	225,000
1983	79,300	275,000
1984	96,300	325,000
1985	121,800	400,000
1986	155,800	500,000
1987~1997	192,800	600,000
1998	202,050	625,000
1999	211,300	650,000
2000~2001	220,550	675,000
200~2003	345,800	1,000,000
2004~2005	555,800	1,500,000
2006~2008	780,800	2,000,000
2009 이후	1,455,800	3,500,000

이외에도 주정부나 외국정부에 납부한 상속세, 단기상속에 따른 과도한 유산세 등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고인의 유산에 포함된 자산에 대해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를 세액공제해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동일 자산에 대해 양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타국에 실제 납부한 세금 또는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단기의 빈번한 상속으

로 인해 동일한 유산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도 있다. 이는 상속개시일과 재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2년 단위로 20%씩(0~2년: 100%, 3~4년: 80%, 5~6년: 60%, 7~8년 40% 9~10년 20%) 한도액을 차감해나감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2) 증여세(gift tax)

증여세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완전하고 적절한 보상보다 낮은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권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의 범주에는 자산의 무상양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활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가치보다 낮은 교환비율로 거래된 저가양도도 포함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으나 증여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연간 1만 1천달러를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조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는 Form 706을 이용하여 증여 사실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은 4월 15일까지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동일인에게 1만 1천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현재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가 없다.

증여세는 [그림 III-2]에 나타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먼저 연간 증여총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과세대상 증여를 확인한 후 이전연도까지 이루어진 과세대상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잠정 증여세를 구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와 표준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각 단계별로 좀더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매 역년(calendar year)을 과세기간으로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영구적 권리양도를 제외한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연간 증여총액을 구하는 것이다. 부부인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부부가 반반씩 증여한 것으로 처리한다⁶⁾.

다음으로 연간 증여총액에서 매년 수증자 1인당 1만 1천달러에 상당한 현재 권리를 제외하고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면 당해연도 과세대상 증여가 산출된다. 이때 기초공제로서 수증자 1인당 1만 1천달러까지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초공제 금액 이하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사망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이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에 내는 입학등록금, 의료기관에 내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교육비·의료비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대납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선기부공제는 연방·주·시정부, 종교·자선·교육단체, 향군단체 등에 제공하는 자선적 증여에 대해 적용되며, 배우자공제는 수증자가 비시민권자인 경우 1988년 7월 13일 이후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만 10만달러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해연도 과세대상 증여에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증여받은 자산의 누적금액을 더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여기서 과세대상 증여라 함은 직·간접적으로 또는 유산신탁기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된 물적·인적·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며, 유산신탁기금을 통한 양도, 부채의 감면, 부채 이자율의 감면, 보험수혜, 현금, 정부채권의 양도, 일부 이혼시 자산배분 및 연부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주식회사 등 기업에 대한 권리 이전, 이전에 따른 투표권이나 처분권의 소멸도

6) 부부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함께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매년 수증자 1인당 2만 2천달러까지는 증여세 납부 없이 제한되지 않은 수의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다.

과세대상 증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상 없이 제공된 서비스는 과세대상 증여에서 제외된다.

끝으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잠정 증여세에서 이전 연도까지의 과세대상 증여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 표준세액공제를 빼주면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최종 산출된다. 즉, 면세대상이 아닌 증여가 이루어질 때도 표준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증여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표 III-3>에는 평생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증여할 수 있는 총액이 나타나 있는데 1982년 22만 5천달러이던 면세금액이 점차 증가되어 2002년에 100만달러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350만달러까지 허용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증여세 산정방식

연간증여총액
- 연간증여공제
- 각종 공제(증여공제액)
= 당해연도 과세대상 증여
+ 당해연도까지의 이전자산 누계액
= 증여세 과세표준
* 통합이전세율
= 잠정 증여세
- 이전연도 증여에 대해 당해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통합이전세액공제(미사용액)
=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는 유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나, 공제범위가 약간 더 복잡하고 1932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증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수증자 1인

당 매년 일정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 증여세 납부를 위해 정부에 제공된 자산(사망 전 3년간 제공된 증여에 대한 세금은 예외)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점 등이 유산세와 크게 다른 점이다.

3)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세대생략세는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되는 유산신탁기금에 대해 권리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세대 간 자산양도시 부과되는 유산세 등 상속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산신탁기금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중간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하여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소득배분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유산소득세(fiduciary income tax)

자산을 상속받는 자는 자산 자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자산분배에 이를 때까지 상속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부동산소득 등에 대해 유산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의무는 자산관리인에게 있다.

나. 경제환경의 변화와 상속·증여세 변화

최근 미국은 상속세율을 계속 낮추어 2010년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시적 법률을 갖고 있어서 2011년에 다시 현재의 상속세율로 복귀하는 다소 이색적인 정책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속세율 완화조치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상속·증여과세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의 완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증여과세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미국 제도의

오해에 기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미국 상속·증여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상속·증여세는 소위 ‘이전과세(transfer taxes)’로 연방정부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과세는 상속세, 세대생략상속세, 증여세를 아우르는 것으로 자산의 이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세대 간 자산이전을 고려하는 개인에게 이전과세는 자녀나 그 다음 세대에게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상속을 하든지 별반 차이가 없도록 과세설계(tax design)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 연방정부 이전과세에 대한 법제적 측면의 고려에서 중요한 것으로 2001년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에 담긴 상속·증여과세 완화책이 있다. 이는 1986년 내국세입법 중 상속·증여과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 2000년 사망세 폐지법안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비록 2000년 사망세 폐지법안이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지만 2001년에 비로소 상속·증여과세 완화책이 실현되었다.

2001년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2001년 5월 25일 양원합동조세위원회, 26일 상하양원 통과를 거쳐 발효되었다. 이의 주된 내용은 이전과세 중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2010년에 폐지하며, 증여세는 존속시키고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 35%와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한다.

연방유산증여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RS Publication 950”은 현행 상속·증여과세에 대한 연방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무

과세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유산은 무과세이고, 증여시 연간공제 이하는 무과세로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유산시 공제 이하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금수여자는 무과세이고 수여자금에 대한 소득세 또한 무과세이다. 자금제공자에게는 공제기부금 이외에는 제공자금에 대해 소득세 공제가 없다.

통합세액공제(공제한도)는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법정금액으로 증여세와 유산세에 공히 적용된다. 2001년 법률에 의거하면, 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는 2009년까지 100만달러 소득공제 후 34만 5,800달러가 한도이고, 유산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는 2009년까지 다음의 표와 같이 소득공제도 증가하고 한도도 증가한다.

<표 III-4> 통합세액공제(공제한도)

(단위: 달러)

	증여세		상속세	
	통합세액공제	비과세한도	통합세액공제	비과세한도
2004~2005	345,800	1,000,000	555,800	1,500,000
2006~2008	345,800	1,000,000	780,800	2,000,000
2009	345,800	1,000,000	1,455,800	3,500,000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증여 행위의 범주이다. 증여행위에 대하여는 (i) 현금을 포함하여 재산을 주는 행위 (ii) 재산의 사용권이나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반대급부로 동일한 가치 이상의 어떤 것으로 받을 기대를 갖지 않고, 주는 행위 (iii) 어떤 것을 전체 가치 미만으로 파는 행위 (iv) 무이자나 인화된 이자로 대여해주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무과세인 증여행위는 (i) 연간공제 이하인 증여 (ii) 어떤 사람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지불한 수업료나 의료 비용 (iii) 배우자에 대한 증여 (iv) 정치조직에 대한 증여, 그리고 (v) 기부 증여이다.

연간공제는 자금수여자 각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04년 당시 1만 1천달러이다.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증여분할(gift splitting)에 의해 2만 2천달러까지 각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한다. 연간공제는 인플레이 조절을 거치게 되는데, 2004년 이후 1만 1천달러 연간 공제는 생활비 조절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공제 후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각 연도에 행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비과세 증여를 제외시키고, 자금수여자 각인에게 연간 공제를 적용하여 남은 액수를 더한 다음 그 해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에서 차감한다. 만약 이것이 음수가 아니면 다음 해에 유효한 ‘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얻게 되며, 만약 이것이 음수이면 해당 액수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유산세는 사망시에 적용되며 조유산(gross estate)에서 공제를 제한 후에 적용한다. 조유산으로는 사망시 지분이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또한 생명보험금, 연금, 사망 전 3년 이내에 이전한 자산의 가치를 포함한다. 공제로는 장례비용, 부채, 배우자공제 등이다. 증여세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잔여액을 유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조유산액과 조정과세증여액 및 증여세액공제의 합이 사망시 신고한도보다 크면 유산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조정과세증여액은 1976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유산액 범위 밖의 증여를 의미하며, 특별증여세액공제는 1976년 9월 8일 이후 1977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만 적용된다. 다음의 표는 2003년 이후 사망자에 대한 신고한도이다.

<표 III-5> 유산세 신고한도

(단위: 달러)

사망연도	비과세한도
2004~2005	1,500,000
2006~2008	2,000,000
2009	3,500,000

유산세와 증여세의 법정한계세율은 일치한다. 다음은 통합세율 구조를 나타내는 표로 누진적 구조를 보여준다.

<표 III-6> 연방이전세 법정한계세율 구조

(단위: 달러)

최저과세 표준액	최고과세 표준액	최저세액	세율(%)
0	10,000	0	18
10,000	20,000	1,800	20
20,000	40,000	3,800	22
40,000	60,000	8,200	24
60,000	80,000	13,000	26
80,000	100,000	18,200	28
100,000	150,000	23,800	30
150,000	250,000	38,800	32
250,000	500,000	70,800	34
500,000	750,000	155,800	37
750,000	1,000,000	248,300	39
1,000,000	1,250,000	345,800	41
1,250,000	1,500,000	448,300	43
1,500,000	2,000,000	555,800	45
2,000,000	-	780,80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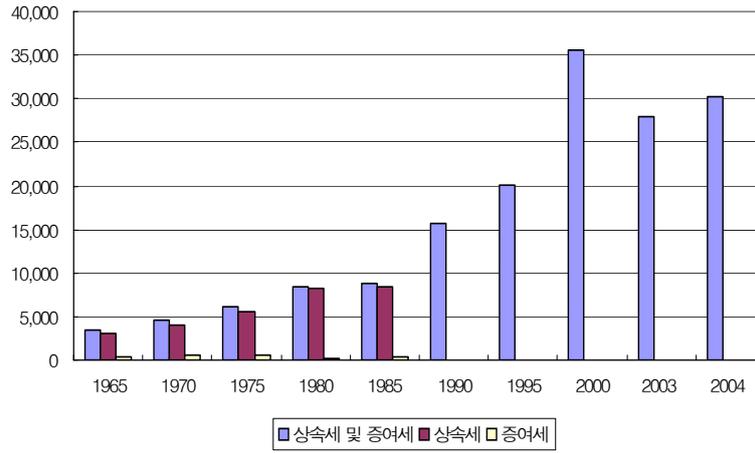
올해 2006년 하원을 통과한 상속세 완화조치는 2010년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상원에서 조정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조정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법정한계세율이 (i) 1천만달러까지 무과세, (ii) 1천만 ~ 2,500만 달러까지 자본이득세율에 따라, (iii) 2,500만달러이상은 최고 30~40% 과세로 이루어진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이전과세제를 고찰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생애주기에 걸친 증여, 상속, 세대생략증여 및 상속의 일관성 확보이다. 이들 모두를 개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생애에 걸쳐 결정되는 통합소득공제액과 매년 주어지는 연간공제액이 증여행위에 부여되고, 또한 생애에 걸친 통합공제액이 상속에도 주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주도면밀한 과세체계의 구축은 증여와 상속에 임하는 각 개인에게 평생에 걸친 자산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증여와 상속의 상호대체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보편적으로 증여가 유리하도록 과세구조를 구축하였다. 우선 증여세는 유산세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세부담이 작는데 그 이유는 증여세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제외기준(tax-exclusive basis)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32년 증여세가 신설될 때 증여세율이 상속세율 보다 낮았던 것도 증여를 권장하는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세수를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7년 증여와 상속은 동일한 법정한계세율구조를 갖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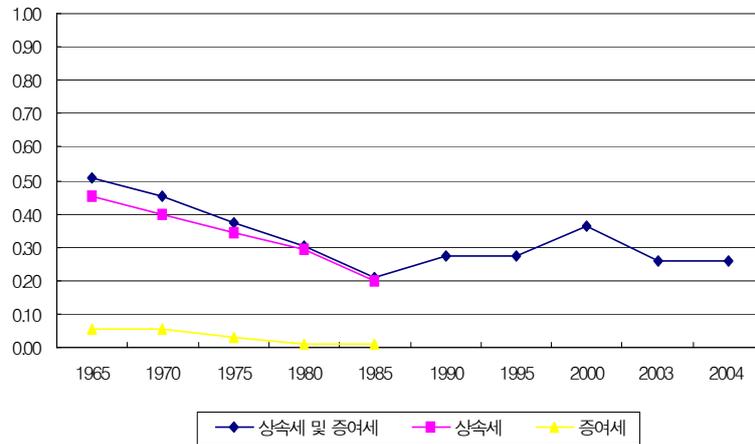
[그림 III-3] 미국의 상속·증여 세수 추이

(단위: 백만달러)



[그림 III-4] 미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비중 추이

(단위: %)



2. 일본

일본의 상속세법은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라는 두 세목으로 과세를 하는 1세법 2세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세라는 점에서 기인하나 양 세의 과세 목적에 따른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상속세법은 1905년에 창설된 세법으로 당시의 민법은 가독(家督)상속을 중심으로 한 상속제도였으며, 상속세법에서도 가독상속과 가독상속 이외의 상속으로 구분하여 과세관계를 정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민법의 개정과 더불어 가독상속제도가 폐지되고 자녀균등상속이 원칙으로 정해졌으며, 배우자에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상속제도의 대폭적인 개정이 행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상속세 과세방법에 대해 모색을 하는 시기도 있었으나, 1958년에 현행 유산취득과세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이 도입되면서 안정적인 상속세 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고도 경제성장, 사회경제의 변화, 특히 지가의 상승 등으로 유산에 관한 기초공제의 인상,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한 각종 특례의 도입이 있었으나 상속세 과세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개정은 없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최근의 가장 큰 변화로는 2003년 세제개정으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산 이전시기 지연에 대처 및 자산을 고령자로부터 차세대로의 이전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배려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 과세제도는 종래 상속세의 보완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증여세에 대해 새로 의미 부여를 하여, 일정의 요건하에서 증여세 과세를 함과 동시에 장래 증여자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증여를 포함한 상속세를 정산하여 계산하는 제도로 증여세의 보완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일본 상속세법의 역사 및 과세체계

1) 일본 상속세법의 변천

이 절에서는 일본의 상속세의 변천을 주요 개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가) 상속세법의 시행 (1905)

일본에서 상속세법은 1905년 4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국가재정은 청일·러일 전쟁으로 전비가 증가하여 국채발행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증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비조달의 일환으로 상속세가 도입되었다⁷⁾.

메이지(明治) 민법의 상속법은 가독(家督)상속과 유산상속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상속세의 과세에 대해서도 당시의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속개시 시기는 가독상속의 경우는 호주의 사망·은거 또는 국적상실, 호주가 혼인 또는 양자관계를 취소하고 집을 떠날 때, 여호주 입부(入夫) 혼인 또는 입부(入夫)의 이혼시이며, 유산상속의 경우는 가족의 사망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다.

한편 호주는 ‘호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가족에 대해 혼인이나 양자(養子) 선택 등에 대해 강력한 지배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한편, 가족의 부양이나 가계·지위·재

7) 그러나 상속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비조달만이 아니라 항구적인 세원으로서는 오랫동안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는 견해도 있다 (安島和夫(2005, p. 2).

산 등을 유지할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상속세법 도입 당시의 정부 견해는 ‘등록면허세는 유통세이며, 상속세는 상속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실에 과세하는 재산세로 재산의 이전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와는 다르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 신 민법하에서의 개정 (1947)

1947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가독상속제도의 폐지에 따른 신상속법이 제정되어 유산과세 형태를 존속하면서 증여세가 증여자 과세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그 뒤 1950년 샤유프 권고에 근거하여 상속세법의 전문개정이 행해져 유산취득과세 형태로 개정됨과 동시에 증여세를 상속세에 포함시켜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생을 통해 취득한 재산가액을 누적하여 과세하는 일생누적과세방식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새로이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라는 과세재산공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생누적과세방식은 세무집행 면에서의 어려움과 과세의 공평성 관점에서 1953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 또는 포괄 유증 혹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행하는 특정 유증에 관해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상속인 이외의 특정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의 도입 (1958)

기존 상속세법의 유산취득 과세체계에 대해 세무집행상 가장분할을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분할이 용이한 유산과 분할이 곤란한 유산 (농지, 동족회사의 주식) 사이의 세부담 불균등 및 농업의 영세화 진전을 촉진하는 등 농업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1958년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이 도입되게 되었으며 동시에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누적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라) 상속시 정산과제 제도의 도입 (2003)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한다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무겁다. 상속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은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증여를 억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상속에 의한 차세대로의 자산 이전 시기가 종래에 비해 대폭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효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상속관계에 있는 일정의 친자간 자산 이전에 대해 생전의 증여와 상속 사이에 자산의 이전 시기 선택에 대해 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전의 증여에 의한 자산 이전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2003년에 상속시 정산과세가 도입되었다.

2)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상속에 의한 과세를 어느 단계에서 포착하여 과세하는가에 따라 유산세 체계, 유산이전세 체계, 유산취득세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유산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이며, 유산이전세 체계는 유산 이전을, 유산취득세 체계는 유산의 취득 시점에서 과세하는 체계이다. 이 중 유산이전세 체계는 상속세를 수수료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현지 유산이전세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거의 모든 나라가 유산세 체계 또는 유산취득세 체계를 취하고 있다.

가) 유산세 체계

유산세 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주목하여, 그 유산의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유산세 체계에 의해 과세를 할 경우 상속인의 수, 유산의 취득·분할 방법에 의해 세부담이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⁸⁾.

유산세 체계를 선택하는 논리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수완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수완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재산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상속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등한 수완을 지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기회로 맡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부의 집중 억제와 재산의 사회 환원에 의한 유효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생전의 소득 청산이라는 점에서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체계이다.

이 과세체계의 장점으로는, 피상속인의 일생을 통한 조세부담의 청산과 자산의 배분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위해 가장분할에 의한 조세부담의 불공평이나 조세회피를 꾀하는 적정납세 개념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또한 유산분할이 곤란한 재산의 승계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취득자산에 따른 조세부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의 집중배제 억제력이 약해, 부의 분할 촉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유산취득세 체계

유산취득세 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취득자 입장에서 파악하여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액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체계이

8) 유산세 체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속재산이 5억 엔이고 상속세율이 20%라고 하면, 먼저 상속재산 5억엔의 20%인 1억엔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4억엔을 상속인이 나누게 된다.

다. 상속인에게 상속에 의해 계승한 재산은 불로소득이며 빈부의 차에 의해 계승 재산액이 다른 것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취득 재산 과다를 파악하여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상속세 과세의 목적에도 합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⁹⁾.

이 과세체계의 장점으로서는 재산 취득액에 따라 조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많은 부를 계승한 자는 그 금액에 따른 조세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의 집중 배제와도 연결된다. 한편, 단점으로는 유산세 체계에서의 장점으로 열거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즉, 가장분할, 조세부담의 공정성과 적정납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취득재산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며, 세무집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 현행 상속세법의 체계

현행 상속세법의 체계는 1958년의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유산취득과세체계를 원칙으로 하면서 과세의 공정성 관점에서 유산과세체계를 도입한 병용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⁰⁾.

- 9) 피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2명이고, 상속재산이 5억엔이라고 하면 먼저 상속인에 대해 5억엔을 안분한다. 이때 부인이 3억엔, 자녀 2명이 각각 1억 원씩 상속한다고 하면, 부인에 대해서는 3억엔에 대한 세율을, 자녀에 대해서는 1억엔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 10) 피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2명이고, 상속재산이 4억 8천만엔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인 및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액 8천만엔 (=부인 5천만+ 자녀 1천 만 x2)을 차감한 4억엔이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 된다. 4억엔을 부인이 2억엔, 자녀가 각각 1억엔씩 상속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액은 1억 9백만엔이 된다 (부인 : 2억 × 40% (세율) - 1,700 (세액공제) = 6,300만엔, 자녀 (1억 × 30% - 700) × 2 = 4600만엔). 이렇게 결정된 상속세액에 대해 부인과 자녀가 기여도를 계산하게 된다. 가령 기여도가 부인이 50%, 자녀가 각각 25%라고 한다면 세액은, 1억 900만엔 × 0.5 = 5,450만엔, 자녀는 각각 2,725만엔씩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액이 1억 6천만엔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되므로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자녀만 각각 2,725만엔씩 납부하게 된다.

이 병용방식에 의한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는 양 과세체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배제한 과세체계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각종 특례의 도입 등으로 인해 과세체계의 기본적인 형태가 형해화(形骸化)되고 있으며, 조세부담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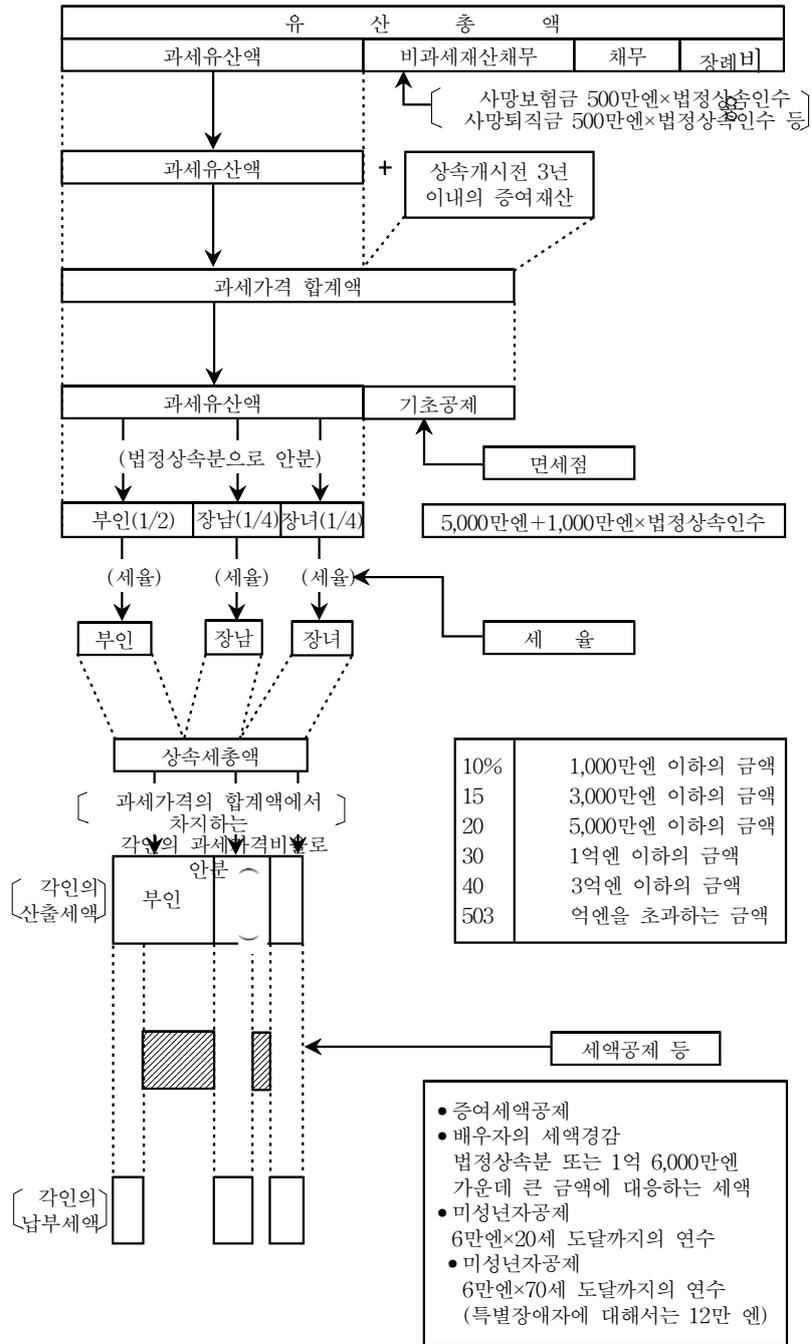
나. 상속세

1) 상속세의 기본 구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상속세 과세방법은 완전한 유산취득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산취득방식에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을 가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상속세 총액 산정시에는 실제 유산분할과 관계없이 유산총액 및 법정상속인의 수, 그리고 법정상속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한다. 그 다음에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 산정에서는 상속세의 총액을 실제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으로부터 각종 세액공제 등(예, 장애자 공제, 배우자 세액경감, 미성년자 공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져 각자의 상속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상의 일본 상속세 기본구조를 [그림 Ⅲ-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유증이나 사망증여 이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재산의 시가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는 상속과세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생전증여를 이용하여 상속과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림 III-5] 상속세 기본구조



2)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가)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1) 상속인, 2) 수증자, 3) 사인증여의 의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 일본에 주소가 없는 납세의무자는, 그가 일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는 그 사람 또는 상속 등에 관련된 피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전의 5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는 때에 한한다.

수증자라 함은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타인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다. 포괄유증이라 함은 재산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유증을 말하는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산분할에 참가하게 된다. 또 특정유증이란 어느 회사의 주식과 같이 특정의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라 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고, 그 효력이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도록 한 경우의 해당 재산 수증자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위의 납세의무자 이외에도 특별 납세의무자로서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그리고 공익법인에게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들 사단 또는 재단은 개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단, 유증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

우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공익법인이 유증에 의해 그 유증자의 친족이나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속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은 개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때에도 유증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상속인과 상속분

(1) 상속인

상속인 및 상속분은 일본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과 일정한 혈족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¹¹⁾

- ①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처 또는 남편)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 ②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때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이를 대습(代襲)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③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 ④ 자녀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

11) 상속에 있어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자도 상속인이 된다. 한편 상속인이 될 자가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우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는 상속권을 잃는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 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때에는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이를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로서는 부모 등이 가까운 자가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부모 등이 동일한 사람들 간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2) 상속분

상속인이 복수로 있을 때 이들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 하고 상속개시에 따라 그 상속재산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공유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

유언으로 상속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유언에 따른다. 즉,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할 수가 있다. 유언으로 피상속인 스스로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고 또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가 있다. 단,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되지 않은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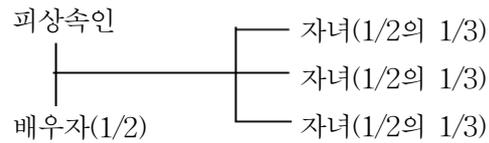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액을 계산한 때, 과세가격의 합계액에서 유산에 관련되는 기초공제액을 뺀 과세유산액은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안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분된 과세유산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 것의 합계가 상속세의 총액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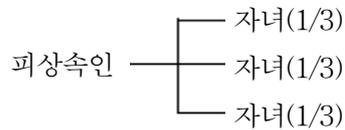
상속세의 계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수는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법정상속에 관하여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상속분은 배우자가 유산의 1/2, 자녀가 1/2(자녀 수로 균등분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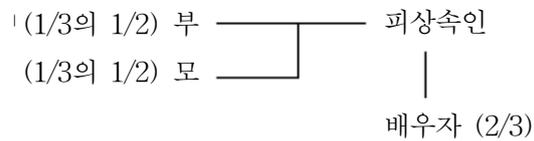
(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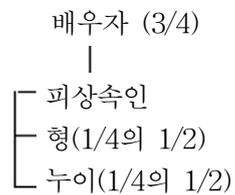
(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



②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의 상속분은 배우자가 유산의 2/3, 직계존속(직계존속 수로 균등분할)이 유산의 1/3이다.



③ 자녀도 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유산의 3/4, 형제자매가 1/4(형제자매 수로 균등분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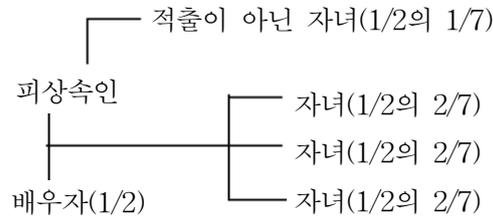


④ 배우자만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전액 배우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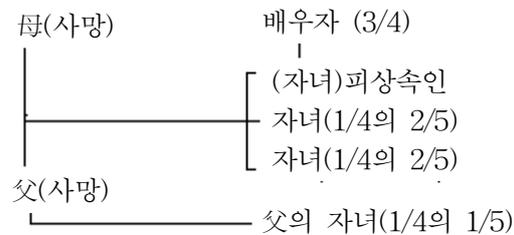
게 상속된다.

①과 ③의 경우,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나 조카 등)이 이들을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⑤ 정식혼인관계 이외에서 태어난 자(비적출자)의 상속분은 적출자 상속분의 반(半)이다.



⑥ 또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같은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 쌍방이 같은 형제자매 상속분의 반(半)이 된다.



1988년 12월 31일 이후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세액 계산상 법정상속인의 수에 포함된 양자의 수는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명, 자녀가 없는 경우는 2명까지로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것은 유산에 관계되는 기초공제액과 상속세 총액의 계산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정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세액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절세 목적으로 양자를 들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과세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1988년 세제개혁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3) 상속세의 과세재산 및 비과세재산

가) 과세재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다음 재산이 상속세의 과세재산이 된다.

- ①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상속재산)
- ②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간주되는 재산(의제상속재산)

우선, 상속재산은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의제상속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 사망보험금
- (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권리
- (다) 사망퇴직금
- (라) 정기금 급부계약(생명보험계약 제외)
- (마) 보증기간이 있는 종신 정기금 급부계약에 관한 권리
- (바) 계약에 의거하지 않은 정기금에 관한 권리(예,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 (사) 분여재산 : 상속재산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여를 받은 자는 그 분여시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 (아) 신탁재산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퇴직급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자)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를 받은 자 또는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유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① 유언에 의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② 유언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또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 변제로 이익을 받은 경우
- ③ 상기의 ① 및 ② 이외의 경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또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행위가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한편 2000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일본 국적 소유자가 상속 등으로 취득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의 대상에 추가되었다. 또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증여를 받은 당시의 시가도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그 증여재산 가운데 증여세 계산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빼고 남은 가격이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나) 비과세재산

상속세에서는 비과세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¹²⁾

- ① 천황 황위와 함께 천황 후계자가 받은 재산
- ② 묘지, 사당, 祭具 및 이들에 준하는 것
- ③ 공익사업용 재산

12) 松田淳・松崎啓介 編(2005) 『税法便覧』

공익사업으로는 예컨대 (1) 종교, 자선, 학술연구 또는 그 보급의 사업 (2) 학교교육 또는 교육사업 (3) 육영사업 (4) 그 외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④ 심신장애자공제제도에 의거한 급부금의 수급권
- ⑤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 가운데 다음에 상당하는 부분
 - (가) 모든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비과세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전액

보험금 비과세한도액=500만엔×법정상속인 수

- (나) 모든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금 비과세한도액을 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각 상속인의 비과세금액=보험금 비과세한도액×(해당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모든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

- ⑥ 상속인이 받은 사망퇴직금의 합계액 가운데 다음에 상당하는 부분
 - (가) 모든 상속인이 받은 사망퇴직금의 합계액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금 비과세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받은 사망퇴직금의 전액

퇴직수당금 비과세한도액=500만엔×법정상속인 수

- (나) 모든 상속인이 받은 퇴직사망금의 합계액이 퇴직사망금 비과세한도액을 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각 상속인의 비과세금액=퇴직수당금 비과세한도액×(해당 상속인이 받은 퇴직수당금의 합계액 / 모든 상속인이 받은 퇴직수당금의 합계액)

4) 상속세의 과세등급 및 세율

2006년 현재 법정상속인의 취득 상속재산 금액계급별 세율과 공제액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상속재산 과표구간별 세율과 공제액

(단위: %, 만엔)

법정상속인의 취득 상속재산액 계급	세율	공제액
~ 1,000만엔 이하	10	-
1,000만엔 초과 ~ 3,000만엔 이하	15	50
3,000만엔 초과 ~ 5,000만엔 이하	20	200
5,000만엔 초과 ~ 1억엔 이하	30	700
1억엔 초과 ~ 3억엔 이하	40	1,700
3억엔 이상	50	4,700

자료: 松田淳・松崎啓介 編(2005) 『税法便覧』 p. 674

현행의 상속세 구간 및 세율은 2003년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2003년 이전의 일본 상속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 이전에는 세율이 최저 10%에서 5억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75%까지 14단계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상속세 구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것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1988년 세제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혁 실시와 더불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먼저 상속세 면세점에 관해서는 1988년, 1992년, 1994년 3차례에 걸쳐 면세점이 인상되어 1988년의 세제개혁 이전에는 「2천만엔 + 400만엔 × 법정상속인」이었던 기초공제액이 2006년 현재는 「5천만엔 + 1천만엔 × 법정상속인」으로 상당히 인상되었다. 이를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 3,600만엔이었던 면세점이 1994년 이후는 9천만엔까지 약 2.5배 상승하였다.

세율구조의 변화를 보면, 1988년의 세제개혁으로 최고세율이 75%에서 70%로 완화하였으며, 세율적용 구간 폭(bracket)이 확대되었으며, 세율 수도 13개로 줄었다. 이후 1992년에는 5억엔 이상이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10억엔으로 구간 폭을 대폭 조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20억엔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1994년 세법개정시는 세율 구간 폭에 대하여 세율 수도 9개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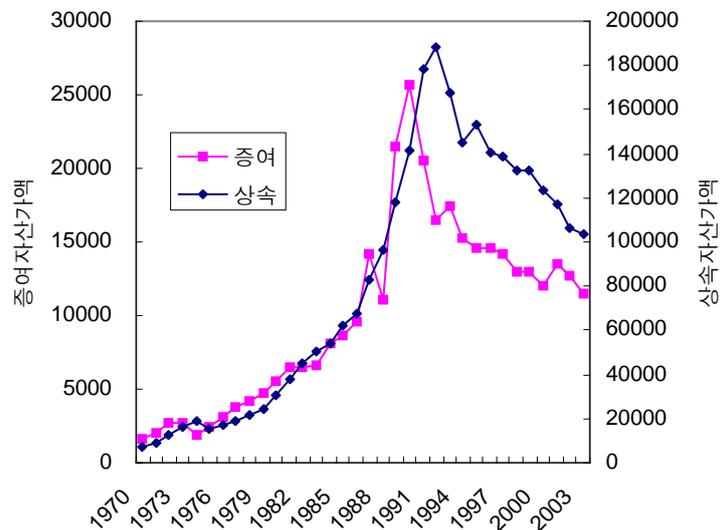
상속세 세율구조 변경의 배경으로는, 2003년까지의 상속세 최고세율 70%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50%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으며, 선진국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아 이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에서 인하하였으며, 누진구조는 개인소득세를 보완하며, 부의 재분배를 꾀한다는 상속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최고세율은 낮추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전의 누진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과세구간 수는 간소화라는 관점과 유산액에 따른 어느 정도 완만한 부담 변화를 확보한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현행 형태로 개정되었다.

5) 상속세 과세현황

다음으로 과세현황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그림 III-6]은 1970년~2003년까지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

액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는 억엔이며 그림의 왼쪽 눈금이 증여재산가액을, 오른쪽 눈금이 상속재산가액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III-6] 일본의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추이 (1970~2003년)



[그림 III-6]은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상속재산의 경우 1992년, 증여재산은 1990년을 정점으로 이전에는 급속히 상승하다가 이후로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나타났던 지가상승 및 재산가격 상승 등 소위 버블경제 시기의 자산가격의 급상승과 버블 붕괴 이후 자산가치 하락이 그대로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을 낮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금액면에서는 상속을 하는 재산액이 증여를 하는 재산액보다 약 10배 정도 많으나 양자 간의 움직임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증여와 상속이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표 III-8>은 상속세의 과세자 비율과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에 대한 상속세 평균세율,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평균세율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III-8> 과세상황의 추이

	상속세						증여세			
	사망 자수 ①	피상속인 (과세분) ②	과세자 비율 ②/①	과세 가격 ③	상속 세액 ④	평균 세율 ④/③	과세 건수	재산 가액 ⑤	증여 세액 ⑥	평균 세율 ⑥/⑤
	천명	천명	%	억엔	억엔	%		억엔	억엔	%
1985	752	48	6.4	62,463	9,261	14.8	347	8,685	788	9.1
1989	789	42	5.3	117,686	23,930	20.3	461	21,491	2,926	13.6
1990	820	48	5.9	141,058	29,527	20.9	510	25,684	3,430	13.4
1991	830	57	6.8	178,417	39,651	22.2	516	20,593	2,392	11.6
1992	857	54	6.4	188,201	34,099	18.1	542	16,471	1,619	9.8
1993	879	53	6.0	167,545	27,768	16.6	555	17,484	1,598	9.1
1994	876	45	5.1	145,454	21,058	14.5	530	15,266	1,312	8.6
1995	922	51	5.5	152,998	21,730	14.2	521	14,570	1,241	8.5
1996	896	48	5.4	140,774	19,376	13.8	512	14,586	1,335	9.2
1997	913	49	5.3	138,635	19,339	13.9	487	14,129	1,299	9.2
1998	936	50	5.3	132,468	16,826	12.7	455	13,009	1,166	9.0
1999	982	51	5.2	132,699	16,876	12.7	445	12,942	1,143	8.8
2000	962	48	5.0	123,409	15,213	12.3	415	11,974	955	8.0
2001	970	46	4.7	117,034	14,771	12.6	376	13,465	812	6.0

자료: 佐藤愼一編(2004) 『圖說日本の税制』 p. 145.

- 13) 2003년 세법개정으로 증여와 상속 간의 차이를 없애는 ‘상속시 정산과세’가 도입되었으므로 2004년 이후는 증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의 <표 III-8>에서 보듯이 피상속인(과세분)에 대한 사망자수의 비율을 보면 대체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사망자수의 5~6%정도밖에 부과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계열적으로 상속세의 과세자 비율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약간이긴 하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상속세 면세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상속세액이 과세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세율로 볼 때 1989년에는 20.3%였던 것이 2001년에는 12.6%로 7.7%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의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비율을 보면 1989년에는 13.6%였던 것이 2001년에는 6.0%로 약 7.6%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이로부터 1990년대를 대상으로 한 최근 10여년 동안 상속세나 증여세의 평균세율이 대폭 하락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자산가격의 하락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세대간 부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여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도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6)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이 일정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 일정액 (상속세 면세점)은 유산에 관한 기초공제액에 해당하는데, 5천만엔에 법정상속인 1인에 대해 1천만엔이 가산된 금액이다.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은 1988년 12월 세제개혁시, 1975년 이후의 개인 재산의 증가 및 지가의 상승, 나아가 일반적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액공제가 2천만 엔에서 4천만엔으로, 법정상속인

14) 일본정부세제조사회(2002)

비례공제가 400만엔에서 800만엔으로 인상되었다. 기초공제액의 상승으로 인해 1987년 7.9%였던 사망자 가운데서 차지하던 피상속인 비율이 다음해인 1988년에는 4.6%까지 내려갔다. 이 후 토지의 상속세 평가 적정화(1992년분부터 실시)에 따라 정액공제가 4,800만엔으로 법정상속인 비례공제가 950만엔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1994년의 세제개정으로 제도의 간명화라는 관점에서 정액공제가 5천만엔으로, 법정 상속인 비례공제가 1천만엔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표 III-9> 기초공제액의 추이

연도	상속세	증여세
1958	150만엔 +(30만엔 × 법정상속인 수)	20만엔
1962	200만엔 +(5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64	250만엔 +(50만엔 × 법정상속인 수)	40만엔
1966	400만엔 +(80만엔 × 법정상속인 수) + 배우자공제 최고액 200만엔	
1971	400만엔 +(80만엔 × 법정상속인 수) + 배우자공제 최고액 400만엔	
1973	600만엔 +(80만엔 × 법정상속인 수) + 배우자공제 최고액 600만엔	60만엔
1975	2,000만엔 +(4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88	4,000만엔 +(8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92	4,800만엔 +(95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94	5,000만엔 +(1,0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10만엔
2001		

자료: 佐藤愼一編(2004) 『圖說日本の税制』

증여세의 기초공제액은 소액 불추구(不追求)라는 관점에서 설정된 것으로, 1975년 이래로 60만엔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 세제개정에서 기초공제액이 100만엔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로부터 청년층·중년세대로 조기 자산 이전을 통해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점과 소득세 면세점과의 균형, 1970년대 이후의 물가수준의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상속세의 공제 및 경감

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세액 산정시에는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각종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의 세액공제에는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공제, 배우자의 세액경감,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5가지가 있고 이 순서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진다.

가) 증여세액 공제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재산 취득자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동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을 경우 납부한 증여세액만큼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구한다.

공제증여세액=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연도분의 증여세액
 \times (당해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당해년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나) 배우자의 세액경감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i) 의 금액에서 ii)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배우자의 상속세액으로 한다.

i) 통상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배우자의 상속세액=상속세총액×
(배우자의 과세가격/상속인 전원의 과세가격의 합계) - 증여
세액공제

ii) 상속인 전원의 상속세 총액에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격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상속세 과세가격의 합계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한 경우의 상속분)을 곱하여 얻은 금액(그 금액이 1억 6천만엔 이하인 경우는 1억 6천만엔)

② 실제 유산분할로 취득한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요컨대 배우자의 취득재산이 상속재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상속분 이하이거나 1억 6천만엔 이하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 미성년자공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엔에 그 미성년자가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속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때에 일본에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라)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자가 장애자인 경우는

그 사람이 7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6만엔(특별장애자는 12만엔)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장애인 공제는 일본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마)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법시행지의 밖(외국)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을 대상으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일본의 상속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된 때는 그 상속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한편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상속이 있고 전후의 상속 모두에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후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액으로부터 전의 상속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조정하여 세액공제를 한다.

이상의 경감이나 세액공제와는 반대로 상속세액의 20% 가산도 있다. 그 내용은 재산취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일촌(一寸)의 혈족(피상속인의 부모와 자녀)이 아닌 자가 상속이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속세액에 20%를 가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20%의 가산에는 한도가 있다. 20%의 가산을 한 결과, 상속세액이 과세가격의 7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70%를 곱한 금액이 상속세액이 된다. 요컨대 상속세의 부담 비율은 과세가격의 70%가 상한이 된다.

다. 증여세

1) 증여세의 과세범위 및 계산

일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여의 정의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본래의 증여와 동등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하는 때에는 증여가 있었다고 간주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예로서는 생명보험 계약기간이 만료한 보험금을 수령한 자가 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나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명의변경시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가 없었던 경우 등이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의 증여가 있었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조사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별장애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수익권에 대해서도 6천만엔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있다. 또 부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자녀가 그 땅에 집을 지은 경우(使用貸借), 그 토지의 사용권 가격은 영(0)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액을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받은 증여재산의 가격에서 기초공제액 110만엔(증여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이 외에도 2천만엔)을 차감한 다음의 잔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다음의 산식에 따라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text{증여세액} = (\text{당해 연중에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 - 110\text{만 엔}) \times \text{세율}$$

또한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액 계산시 외국에 있는 재산의 증여를 받고 일본의 증여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외국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증여세의 기초공제 후 과세가격 계급별 세율과 공제액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10> 증여세의 과세가격 등급별 세율 및 공제액

(단위: %, 만엔)

기초공제후의 과세가격	세율	공제액
200만엔 이하	10	-
200만엔 초과 ~ 300만엔 이하	15	10
300만엔 초과 ~ 400만엔 이하	20	25
400만엔 초과 ~ 600만엔 이하	30	65
60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40	125
1,000만엔 초과	50	225

자료: 佐藤愼一 編(2004) 『図説日本の税制』

2) 증여세의 특례

증여세에는 주택취득자금의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 특례, 증여세의 배우자공제,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액의 납세유예 특례 등 여러 특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주택취득자금의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 특례

이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 특례는 증여를 받은 해의 연간소득이 1,200만엔 이하로,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집에 거주한 적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개인이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주택의 신축 또는 신축주택이나 중고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거주한 때, 또는 곧바로 거주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는 당해연도분 증여받은 주택취득자금 중 1,500만엔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5분5승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그 제한이 있는데 신축 또는 취득한 주택의 연면적은 50m² 이상이고, 중고주택은 내화건축물에 대해서는 25년 이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20년 이내에 건축된 것이어야 한다. 2001년도 세제개정에서 換買(집을 팔고 다시 산 경우)나 증개축에 들어간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증여도 특례 대상에 추가되었다.

위에서 5분5승 방식이란, 1,500만엔까지의 주택취득자금 증여에 대해 그 증여가 5분의 1씩 5년에 걸쳐 실시되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10만엔의 기초공제를 5년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550만엔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 상한금액 950만엔(190만엔×5)에 대하여 매년 190만엔(상한금액)씩이 5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된다.

나) 증여세의 배우자공제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간에 주거용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가 있는 경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취득한 집에 거주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주거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적용된다. 이때는 기초공제 110만엔 외에 최고 2,000만엔까지가 증여세의 과세가격으로부터 공제된다. 물론 동일의 배우자로부터는 일생에 한번밖에 이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 농지 증여와 관련된 납세유예 특례

농지 등에 관계되는 납세유예의 특례에는 증여세 납세유예의 특례와 상속세의 납세유예 특례 두 가지가 있다. 이들 특례는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지의 세분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정책의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이다.

증여세의 납세유예 특례는 농업을 계승하는 추정상속인 한 사람

에게 농지의 전부와 채초(採草)방목지 및 준농지 각각의 3분의 2 이상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의 증여세를 대상으로 하여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증여자의 사망일 까지 납세를 유예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의 과세시 그 농지 등을 증여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증여세의 납세유예 특례조치이다.

다음으로 상속세의 납세유예 특례는 농지 상속인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항구적인 경작 또는 축산용으로 이용할 때 보통 성립하는 거래가격(농업투자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초과부분 상속세에 대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그 납세를 유예하고 1)해당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해당 상속인이 농지를 농업후계자에게 생전 일괄 증여한 경우 3)해당 상속세 신고기한 후 20년간 농업을 계속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납세를 면제하는 것이 상속세의 납세유예 특례조치이다.

라. 경제 환경의 변화와 상속·증여세 변화

일본의 상속·증여세제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율 및 세율구간을 조정하여 왔다. 1992년 버블 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도 침체되는 극심한 불황을 10여년 이상 경험하였다. 장기에 걸친 불황을 타개하고자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경제 정책과 더불어 경기 진작을 위한 규제완화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많은 개편이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단행된 세계개혁 가운데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시 정산과세

10년 이상 진행된 불황으로 인해 소비가 줄게 되자 일본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상속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증여세의 개편을 통해 증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고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히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제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래의 소비와 연관이 있는 상속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증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I-7]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세액계산

<전 제>

부부와 자녀가 2명인 가족의 부(피상속인)이 유산을 남기 장남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여(2회)를 받았음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생전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선택하여 현행의 증여세제도 대신, 증여시에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하고, 이후 상속시에 그 증여재산과 상속재산과 합계한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지불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 간의 정산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여자는 65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는 20세 이상의 자녀인 법정상속인이다. 이 제도는 수증자인 형제자매가 개별적으로 증여자(부 또는 모)별로 선택할 수 있다. 증여재산의 종류나 금액, 증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증여시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여러 해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 틀 2,500만엔(특별공제)를 공제한 후의 금액에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시에는 그때까지의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현행과 마찬가지로 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법정상속을 계산한다. 이때, 상속재산과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시의 시가로 한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취득 등으로 자금의 증여를 받은 경우는 65세 미만의 부모로부터의 증여라도 상속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자금의 증여세 대해서는 비과세 틀(세액공제)을 3,500만엔으로 하는 특례가 도입되었다.

2) 사업승계

회사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우 1)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2) 토지에 관한 경감조치 3)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감세 등 상속·증여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토지에 관한 경감조치와 자사주식에 대한 경감조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I-11> 사업승계에 관한 세제

구분	역년과세	상속시 정산과세
증여자	제한 없음	부모가 65세 이상 (부·모별로 선택할 수 있음)
수증자		20세 이상 자녀 (형제별로 선택할 수 있음)
선택사항 제출	없음	필요 (한 번 선택하면 상속시까지 계속 적용)
공제	기초공제액(매년): 110만엔	비과세: 2,500만엔 (한도액까지 복수년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세율	누진세율 10~50% (6단계)	일률 20%
적용수단	증여를 받은 해 익년 3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	선택을 개시한 해 익년 3월 15일까지 본 제도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제출하여야 함
상속시 정산	상속세와는 분리하여 계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가산됨)	상속세 계산시에 정산 (증여재산은 증여시 시가로 평가)

가) 토지에 관한 경감조치 : 소규모 택지 등 경감특례

이 제도는 특정 소규모 택지 등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동일 생계 친족이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제공한 택지 등)을 상속한 경우는 상속세액 평가를 경감하는 제도로, 특정 사업용 택지 등은 400m²까지 평가액의 80%를 감액해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400m²이고 피상속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액(노선가)이 1억엔인 경우 소규모 택지 등 경감특례를 이용하면 상속세

평가액이 2천만엔이 되어 2천만엔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지불하면 된다.

$$\begin{aligned} &(\text{감액되는 금액}) 1\text{억엔} \times 400\text{m}^2 / 400\text{m}^2 \times 80\% = 8\text{천만엔} \\ &(\text{상속세 평가액}) 1\text{억엔} - 8\text{천만엔} = 2\text{천만엔} \end{aligned}$$

또한 특정 거주용 택지에 관한 특례로, 특정 거주용 택지 등은 240m²까지 평가액의 80%가 감액된다. 예컨대, 상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400m²이며 피상속인이 이를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례를 이용한 상속세 평가액은 5,200만엔이 되어, 5,200만엔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begin{aligned} &(\text{감액되는 금액}) 1\text{억엔} \times 240\text{m}^2 / 400\text{m}^2 \times 80\% = 4,800\text{만엔} \\ &(\text{상속세 평가액}) 1\text{억엔} - 4,800\text{만엔} = 5,200\text{만엔} \end{aligned}$$

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 등의 경감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 후 일정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되판 경우는 의제배당과세(최고세율 50%)가 아니라 주식양도익과세(세율 20%)로 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였다.

이 특례의 적용은 (1)상속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며 (2) 상속개시 익일로부터 상속세의 신고기간(상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개월) 익일 이후 3년 이내에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비상장주식을 발행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3. 기타 주요국가 현황

가. 개요

최근 호주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요세제 비교연구에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0개국의 유산·상속·증여에 대한 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8개 국가의 상속·증여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는 무과세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가 주정부에 의해 과세되고 있다. 법정한계세율은 최고 7%이다.

캐나다는 직접적으로 과세하지는 않고 있으나 자본이득에 의한 소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 및 상속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과세되고 있다. 법정한계세율은 최고 2%이다.

아일랜드는 자본획득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20%의 단일세율을 갖는다. 상속과 증여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중저가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자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부과되는데 최고세율은 9%이다.

네덜란드는 상속세가 누진구조로 부과되고 있다. 법정한계세율은 5%에서 68%에 이른다. 특이한 것으로 자산이전의 쌍방 간의 관계와 과세표준에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진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부과되는데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뉴질랜드는 증여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누진세율구조로 0%에서 25%에 이른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처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뉴질랜드의 주택지원제도인 주거보조비(supplement accommodation)제도에 의해 개인별로 소득에 따른 누진적 세율

구조를 간접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전통적인 구조를 갖는다. 지역마다 자치적으로 세율을 결정한다. 법정 한계세율은 7.65%에서 34%까지 다양하다. 자치단체는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하는데 7%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주정부(Cantons)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정 한계세율은 10%에서 50%에 이른다. 자산이전의 쌍방 간의 관계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교적 저율인 3.3%가 적용된다.

영국은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20%와 40%의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 중앙정부는 4%의 양도소득세도 과세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은 전통적인 과세 체계로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의 세수도 크고 각종 상속공제 또한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영국은 유산세 구조에서 유산 취득세형인 자본이전세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속세로 변화된 역사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상속·증여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경제사회 환경이 변하고 글로벌화하면서 상속·증여과세에 대한 제 국가들의 반응은 적어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전통적인 상속·증여과세를 유지하면서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생전증여가 유리하도록 변화시킨 것이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유형은, 상속·증여과세의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유명무실해지자 이를 폐지한 경우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들 수 있다. 국

제금융거래가 활발하고 조세회피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과감하게 상속·증여과세를 축소시키고 다른 세원을 확보한 것이다.

셋째 유형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경우이다. 캐나다와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유산세형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을 취하되, 상속 개념에서 과세하기보다 증여 또는 양도 개념에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두 나라의 경우도 상속·증여 세수가 감소하거나 미미하여 전환을 시도하기가 비교적 쉬웠다고 생각된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세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캐나다와 아일랜드의 경우도 세수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상황이었다. 첫째 유형인 상속·증여과세를 유지하면서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전략적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4개국의 상속·증여제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개략적으로 볼 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유산세형이면서 상속행위보다는 증여행위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중이고, 일본은 유산취득세형이며, 캐나다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였다.

나. 영국

현행 상속세의 모태가 되는 유산세(estate tax)는 1894년에 도입되어 1974년까지 시행되었다. 사망 전 7년 내에 행해진 생전이 전만을 사망유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했던 유산세는 도입 당시 최저 1%, 최고 8%의 15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상향조정되어 최고세율이 1949년 80%에 이르렀다. 그 후

1961년에 들어서야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해 배우자 간 자산의 생전이전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¹⁵⁾.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유산세가 폐지되고 1975년부터 자본이전세(capital transfer tax)가 시행되었다. 부의 분산을 실현하기 위해 상속과세를 강화한 자본이전세를 도입한 것인데 그와 같은 효과는 얻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활동만 위축시켜 IMF관리체제를 불러들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본이전세는 증여자가 평생 동안 행한 모든 증여에 대해 그 금액을 누적합산한 다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증여자가 사망하면 유산에 대하여 생전이전에 대한 과세시도달한 초과누진세율상의 한계세율에서부터 세율 적용이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세부담을 크게 높였다. 한편 배우자 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를 유지하였다.

1986년 4월에는 자본이전세가 폐지되고 상속세(inheritance tax)가 도입되었다. 이는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상속과세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으로 이때 생전증여를 유인하는 현행 상속세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감면 내지는 폐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은 배우자 간 상속·증여는 완전 면세하고 사망 전 증여의 누적합산에 대해 체감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증여세는 자본이득 차원에서 상속세 비례세율의 절반인 20%를 적용하는 등 상속보다는 증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1) 상속세

15) 영국에서는 자산의 생전이전 즉, 증여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어 증여세라는 세목은 없다.

상속세는 1984년 상속세법과 부차적인 재정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유산집행인이 된다. 상속세의 납부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망시 자산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균등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속세는 유산총액에다 사망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생전증여의 누계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와 비과세·감면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40%의 세율을 곱하여 구해지는데, 이를 간략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유산총액} + 7\text{년 이내 증여분}) - (\text{채무, 장례비 등 각종 공제} + \text{비과세} \cdot \text{감면})\} \times \text{세율} = \text{상속세액}$$

이때 과세가격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가가 되며,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이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채무, 장례비, 유산관리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인정하며 배우자 간 자산의 무상이전은 상속이든 증여든 또한 특별신탁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 면세하고 있다. 단, 증여자/유증자인 일방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수증자/수유자인 타방 배우자가 해외에 주소를 두었거나 영국인이 아닐 경우 5만 5천파운드를 면세 상한으로 설정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증여나 유증이 직접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자산이전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행해질 때

도 면세를 불허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공제도 허용되고 있어 과세대상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서도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기초공제는 1998년 22만 3천파운드였으나 그 후 2001년 24만 2천파운드, 2002년 25만파운드, 2003년 25만 5천파운드, 2005년 27만 5천파운드로 꾸준히 상향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체감공제(tapering relief)라는 특이한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표 Ⅲ-12>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과 증여를 연계하여 증여자의 생존연수에 따라 상이한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를 한 후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상속보다 생전증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2> 증여 이후 생존기간에 따른 체감공제 비율

과세대상 증여와 사망 시점 사이의 기간	정상세율에 대한 비율(%)
3년 이하	100
3년 이상 ~ 4년 이하	80
4년 이상 ~ 5년 이하	60
5년 이상 ~ 6년 이하	40
6년 이상 ~ 7년 이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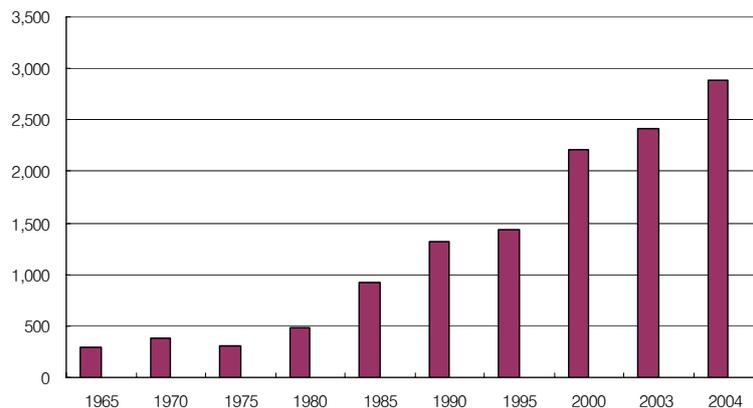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각종 공제 이외에도 영국은 다양한 비과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우선 자선단체, 국가기관, 피용자기금 및 등록주택 협회 등의 상속은 전액 비과세된다. 적격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역시 비과세되는데, 여기서 적격정치단체란 증여행위 발생 전 마지막 총선에서 2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거나 1인의 국회의

원과 15만포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을 가리킨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가 대상이며, 1988년 3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10만파운드까지만 공제가 허용된다. 그 밖에 전사 또는 공무로 인한 상속, 국가적인 유산이나 공공물의 보존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 행해지는 상속 등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속세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8] 참조) 상속세 세수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GDP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은 1980년대 이후 0.2~0.3%로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의 상속·증여세수에 비해 낮은 편이며, 프랑스나 독일의 상속·증여세 세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물론 영국에서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과 증가추세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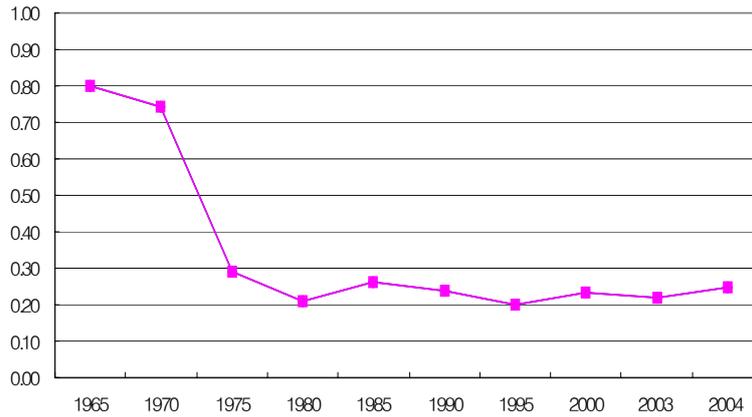
[그림 III-8] 영국의 상속세 세수 추이

(단위: 백만달러)



[그림 III-9] 영국의 GDP 대비 상속세 세수비중 추이

(단위: %)



2) 증여에 관한 세제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차원에서 과세되고 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가 4월 6일~9월 30일 사이에 일어난 경우 다음해 4월 30일까지, 10월 1일~4월 5일 사이에 증여되었다면 자산이전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 이후 6개월까지가 증여세 납부기한이다.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세의 1/2인 20%이다.

생전증여에 대하여 영국은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다양한 면세조치들이 이를 입증해준다. 우선 동일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매년 250파운드 이하의 증여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혼과 관련된 증여에 있어서도 아버지 5천파운드, 할아버지 및 결혼 상대자 2,500파운드, 그 밖의 사람들 1천파운드까지는 면세된다. 자녀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불되는 비용도 비

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 적격정치단체에 대한 증여, 공인된 단체에 대한 토지의 증여, 국가적 목적을 위한 증여 등도 모두 공제 가능하다.

다. 독일

상속·증여과세의 연원은 1906년의 독일제국 상속세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59년 새로운 상속세법이 제정되었으며, 1974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은 상속·증여세법(Erbchaft-und Schenkungsteuer)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생긴 부의 증가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상속과 생전증여에 대한 세부담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수준과 누진구조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별도의 세율체계가 아닌 하나의 세율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자산취득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¹⁶⁾. 생존자 간 증여의 경우에는 통상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단, 특정 목적과 연계된 자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한 가족이나 몇몇 특정 가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은 납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자산이 최초 이전된 시점부터 매 30년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6) 독일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나머지 3/4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의 상속·증여세제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의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3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I 범주에는 배우자, 자녀와 입양자녀, 손자, 증손자가 포함되며 상속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도 제 I 범주에 속한다. 제 II 범주에는 형제, 자매, 생질, 질녀, 양부모,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가 포함되며 증여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제 II 범주에 속한다. 그 밖에 법적 실체를 포함한 기타의 인은 제 III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무상취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증여자산의 평가 기준일은 납세의무 발생시점이며 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자산의 가치가 결정된다.

납세의무의 범위는 자산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양측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독일 거주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독일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증여 시점에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독일 거주자인 경우에도 자산 소재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면 독일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몇 가지 유형의 자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농림업 자산, 부동산,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내국 법인의 주식, 국내에 등록된 선박이나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의해 보장된 저당권·채권·기타 권리, 그리고 이들 자산에 대한 이용권이 그것이다.

과세대상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안 즉, 상속사건이나 증여행위의 관점에서 정의되는데 사망으로 인한 자산취득은 네 가지 유형, 생존자간 증여는 열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과세대상을 정의함에 있어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나 내용 면에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수용하여 부의 증가를 과세 대상인 자산의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유산총액과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가액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와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납세의무자의 범주 및 과세대상 취득자산의 가치에 따라 차등세율을 곱하여 구해지는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증여세도 이 식에서 유산총액 부분만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누적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ext{유산총액} + 10\text{년 이내 수증분}) - (\text{채무, 장례비 등 각종 공제} + \text{비과세} \cdot \text{감면})\} \times \text{세율} = \text{상속세액}$$

과세대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발생한 부의 증가이며, 공정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독일에서도 상속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많은데, 특기할 만한 것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의 신분관계에 따라 분류한 납세의무자의 범주별로 <표 III-13>과 같이 인적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표 III-13> 인적공제 한도

(단위 : 유로)

Beneficiary/donee	공제액
배우자	307,000
자녀 및 입양자녀	205,000
제 I 범주에 포함되는 기타 수증자	51,200
제 II 범주에 포함되는 수증자	10,300
제 III 범주에 포함되는 수증자	5,200

이에 덧붙여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특별생계비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공제액을 설정해놓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아래 <표 III-14>에서 보듯이 생계비 명목으로 배우자 25만 6천유로, 자녀 10,300~52,000유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표 III-14> 특별생계비공제 한도

(단위 : 유로)

수혜자/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256,000
자녀 5세 이하	52,000
5~10세	41,000
10~15세	30,700
15~20세	20,500
20~27세	10,300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부채 및 상속과 관련(예: 유산분할·법정 상속분·대상상속분)하여 생기는 부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례비용, 분묘비용, 분묘유지비, 상속으로 인한 쟁의 해결비, 분할 비용 등도 총액 2만마르크까지는 서류 없이 공제해 주고 있다.

한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액 가사자산과 관련하여 제 I·II범주의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는 가재도구는 1~4만마르크, 동산은 2~5천마르크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의 생계배려를 위해 귀속되는 자산은 다른 자산과 합하여 4만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된다.

공익용 자산은 통상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받는데,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산을 기념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거나 20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 및 문화재반출제한법에 의해서 국보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일정한 공익단체에 출연한 자산은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정당에 기부한 자산 또한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비과세된다.

독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공통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 잔존가족(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생계배려 차원에서 특별공제를 허용하므로 상속인의 세부담이 수증인의 세부담보다 가벼운 편이다. 납세의무자의 범주 및 과세대상 취득자산의 가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을 정리해보면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차등세율

(단위 : %)

과세대상 취득자산의 가치	납세의무자 범주에 따른 세율		
	제 I 범주	제 II 범주	제 III 범주
52,000 유로 이하	7	12	17
256,000 유로 이하	11	17	23
512,000 유로 이하	15	22	29
5,113,000 유로 이하	19	27	35
12,783,000 유로 이하	23	32	41
25,565,000 유로 이하	27	37	47
25,565,000 유로 초과	30	40	50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된 후에는 이전연도의 증여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아울러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독일 거주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상속·증여세 부과로 인하여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상속의 경우 과세부담을 3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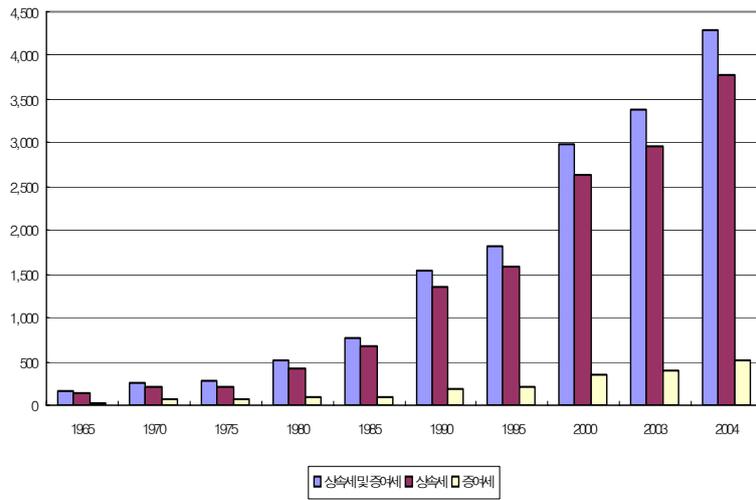
으로 경감해주고 있다. 기업 전체를 상속하는 경우 국내 소재 사업자산, 농림업 사업체, 자본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지분(25% 이상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25만 6천유로를 특별공제하고, 특별공제 이후 남은 가액의 60%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 등(지분 제외)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0년간 납부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 세제혜택은 해당 자산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철회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속세·증여세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0]). 상속세의 경우 1985년의 680백만달러에서 2004년에는 3,769백만달러로 20년간 약 5.5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증여세는 93백만달러에서 514백만달러로 같은 기간 5.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자 모두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의 양자의 증가율을 보면, 상속세가 1985~2004년과 비슷한 약 5.07배(134백만달러→ 680백만 달러) 증가한 데 비해 증여세는 3.32배(28백만달러→ 93백만달러)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GDP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2004년 현재 상속세가 0.17%, 증여세가 0.02%로 상속세가 8.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197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증여세는 1995년의 0.01%에서 2004년에는 0.02%로 2000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2000년 재단으로의 증여에 대한 조세감면을 소폭이나마 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 생존자가 거래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증여를 권장하는 제도개편을 행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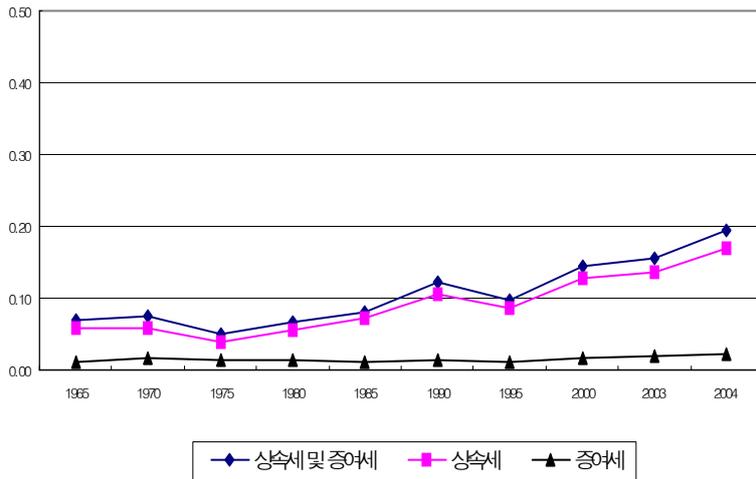
[그림 III-10] 독일의 상속·증여 세수 추이

(단위: 백만달러)



[그림 III-11] 독일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비중 추이

(단위: %)



라. 프랑스

프랑스의 조세체계는 직접세, 소비세, 등록세 및 관세로 대별되는데, 이 중 소유권 변경과 평가에 관련된 세목인 등록세의 범주 안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포함된다.

프랑스도 앞서 살펴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의 과세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heritiers)과 유증을 받는 자(legataires)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donataire)가 된다.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증여자는 해당 자산을 즉시 포기하여야 하며,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프랑스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납세의무자가 프랑스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자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납세의무자가 프랑스 비거주자이거나 지난 10년간 적어도 6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프랑스에 소재하는 동산 및 부동산(국공채·지분·채권 등 포함)으로 과세대상이 한정된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유산총액과 증여총액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 및 비과세·감면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유산총액} + 10\text{년 이내 증여총액}) - (\text{채무, 장례비 등 각종 공제} + \text{비과세} \cdot \text{감면})\} \times \text{세율} = \text{상속세액}$$

과세가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자산의 평가액에 의해 결정되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의 시가가 과세가격이 된다. 프랑스는 세법상에 시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비교법에 의한 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자산의 유형별로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의 평균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된다. 그러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공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므로 보통 산술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이용되며, 보충적으로 수익가치와 생산가치의 평가방법이나 상장법인 주식과 비교가 되는 교환가치, 개방시장 거래가격, 초과수익력에 의한 평가방법 등도 사용된다. 채권은 액면가액에 피상속인에게 지불되지 않은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사용수익권 및 허유권은 자산금액에다 일정 비율(1/10~9/10)을 곱하여 가치를 산출하며 영업권은 공표된 표준율표에 의한 방식(barème par professions)이나 비교법, 소득·외형금액·순소득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구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직전 몇 연도의 수익금액 또는 외형금액에 상수(1~5)를 곱하여 산출하는 경험법에 의한 평가를 권장하고 있으나 산술법에 의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 따라 인적공제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배우자 간의 상속 및 증여는 7

만 6천유로, 직계존비속 5만유로, 조부모로부터 손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3만유로까지 과세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또한 상속인에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3번째 자녀부터 305유로를 감면해주는 독특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직계가족 기준 610유로가 한도이다. 이혼 후 18세 이하의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은 매년 2,700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65세 이하인 경우 50%를, 65~75세 사이인 경우에는 3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공제 4만 6천유로, 개인기업의 지분 증여 1만 5천유로를 공제해주며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305유로를 한도로 50%를 감면해준다. 이와 더불어 부채는 전액, 장례비는 910유로를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각종 공제 제도들과 더불어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 1982년 1월 1일 이후 전몰군인 또는 테러희생자의 상속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991년 11월 20일부터 70세 이후 지급되는 수당이 3만 300유로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기타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 및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과세표준 계산시 50%를 감면하고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또는 자유직업활동을 하는 개인기업에 속하는 동산 및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들 감면 조치는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도 상속세가 면제 혜택을 받으며 국가, 공공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증여한 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도 모두 면제된다. 산림의 경우 해당 금액의 3/4이 비과세되고 예술품·수집품,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국가에 기증한 경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의 경우 생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이전시 전액 비과세된다.

앞서 살펴본 독일과 유사하게 프랑스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의 세율이 적용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친밀도에 따라 상이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속의 형태는 배우자상속, 직계상속, 방계상속(형제·자매 상속)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표 III-16>~<표 III-18>과 같으며 그 밖에 4촌 이내의 부모 간 상속 55%, 5촌 이상의 부모 간 상속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III-16> 배우자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

(단위 : 유로, %)

과세구간	세율
7,600까지	5
7,600 ~ 15,000	10
15,000 ~ 30,000	15
30,000 ~ 520,000	20
520,000 ~ 850,000	30
850,000 ~ 1,700,000	35
1,700,000 초과	40

<표 III-17> 직계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

(단위 : 유로, %)

과세구간	세율
7,600까지	5
7,600 ~ 11,400	10
11,400 ~ 15,000	15
15,000 ~ 520,000	20
520,000 ~ 850,000	30
850,000 ~ 1,700,000	35
1,700,000 초과	40

<표 III-18> 방계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

(단위 : 유로, %)

과세구간	세율
23,600까지	35
23,600 초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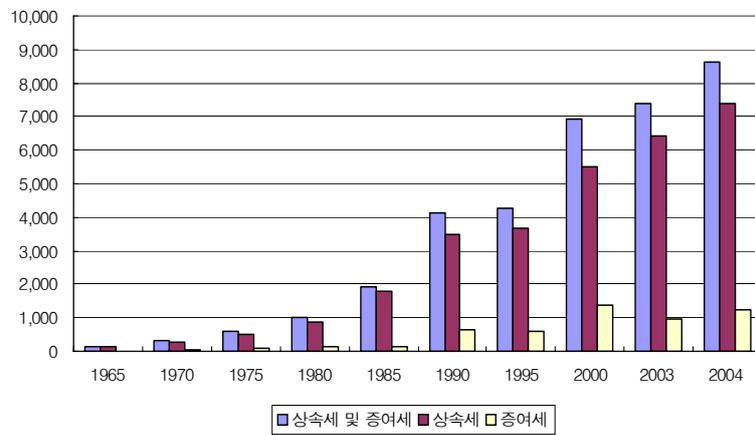
프랑스도 기업의 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 5년 동안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자산의 50%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첫째, 주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둘째, 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3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지분보유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셋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6년 동안 해당 기업을 보존해야만 한다. 넷째, 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활동(파트너십의 경우 주된 활동,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경영)을 5년간 지속해야 한다. 한편 기업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75세 이하이면 30%를, 65세 이하이면 50%를 비용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은 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달 0.7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프랑스의 상속·증여세 세수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12] 참조), 독일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속·증여세 세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상속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속세의 경우 1985년 1,778백만달러였던 상속세가 2004년에는 7,369백만달러로 20년간 약 4.14배 증가하였으며, 증여세는 같은 기간 154백만달러에서 1,241백만달러로 약 8.06배 증가하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증여세 세수가 상속세의 1/6 정도 불과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과 1985년의 상속세수, 증여세수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즉, 1970년에서 1985년의 15년간 상속세수는 약 6.46

배(275백만달러→1778백만달러) 증가하였으나, 증여세는 약 5.31배(29백만달러→154백만달러) 증가한데 그치고 있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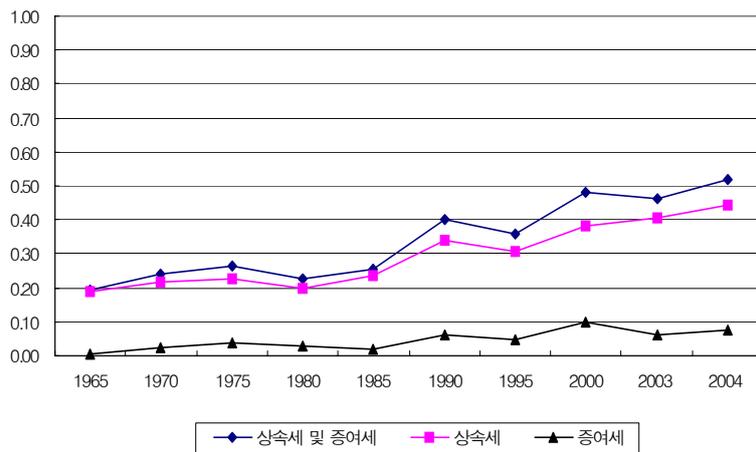
[그림 III-12] 프랑스의 상속·증여 세수 추이

(단위: 백만달러)



[그림 III-13] 프랑스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비중 추이

(단위: %)



마. 캐나다

상속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조세를 다루는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에 연방자본이전세(federal capital transfer tax: 유산과세형 상속세)를 폐지하고 배우자 간 재산의 무상이전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증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세제를 개혁하였고, 호주는 1977년에 상속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1992년 이후 사망자부터는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탈리아·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의 상속과세 폐지(2004. 1.1)에 이어 2005년 1월 1일부터 스웨덴 정부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다.

캐나다의 세제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생전증여와 사망시의 유산상속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 대신 증여나 상속에 의해 재산이 무상이전 하는 때에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피상속인은 사망 바로 직전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그 대상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대상이 자본자산이면 자본이득을 산정, 이를 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합산·과세하는 방법으로 과세한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소득세제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그 원천에 따라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자본이득이 그것이다. 자산소득은 임대료·이자·배당·로열티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과세소득은 그 네 개 유형별로 산정하지만, 각각 산정된 소득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자본이득(1주택의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은 면세된다)은 그의 75%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득의 특성인 집중효과(bunching effects)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캐나다의 거주자는 내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것의 양도와 농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의 누적합산액으로 50만달러까지는 면세된다. 그리고 주된 주거의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내국인에게 면세하는 규정이 있다. 연방소득세 세율은 2000년 1월 1일 현재 17% 내지 29%의 3단계 초과누진구조이다. 과세구간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주정부도 소득세를 과세(세율은 주정부마다 다르다)하는바, 이러한 주정부의 모든 부담을 반영하는 최고 한계 세율은 최저 43.5% 최고 51.7%에 달한다. 그런데 주정부의 소득 과세에서는 자본이득의 경우 그 2/3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에 그 실효부담은 이보다 낮아진다.

캐나다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득세 제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유상처분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자는 그 증여한 재산의 공정시장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 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제수입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증여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100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그 주식의 공정시장가격 500달러로 평가되는 때 이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그 주식을 자녀에게 500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이득은 400달러(500-100)가 되고, 부모는

300달러($400 \times 75\%$)의 자본이득이 과세소득에 합산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이를 600달러를 받고 양도하면 100달러의 자본이득이 실현되고 그 중 75%인 75달러가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개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적용된다. 사망한 개인은 사망시점 바로 직전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법에 따라 산정(평가)되는 간주수입금액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위의 예로 이를 설명하면, 부모가 사망하면서 그의 자녀에게 그 법인의 주식을 주는 것으로 유언을 한 경우 부모는 사망 바로 직전에 그 주식을 500달러에 양도하여 400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한다. 유언집행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망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400달러의 75%인 300달러의 자본이득을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유산인 주식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달러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즉 자녀가 유산분할을 받을 때 그 주식에 대하여 부모에게 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공정시장가격 상당액은 무상이전자의 수입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즉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증여와 상속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우자 간의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의 자본이득은 마지막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에만 비로소 과세되는 것이다. 사망시점의 의제자본이득과세는 재산의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산의 가치증분(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이 장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추이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상속세 재산가액이 줄어든 일본을 제외하면, 상속·증여세 세수는 1990년대 이후 증대하고 있다. 둘째, 세수 크기 면에서 본다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최소 7~8배 이상 크나, 최근 들어 증여세 세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조가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상속·증여세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상속세의 증가추세 및 증여세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구체적 원인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공통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피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래의 소비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권장하려는 움직임들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승계에 관해 많은 나라에서 상속 및 증여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증여세 중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일체화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본 골격을 바꾸는 세제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종래의 상속세의 보완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증여세가 상속세와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증여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에서는 10년 이상 진행된 장기불황 및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즉, 불황으로 인해 소비가 줄게 되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래의 소비와 연관이 있는 상속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증여를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의 진전은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시기가 상속인의 생애주기(life cycle) 후반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속이 어느 정도의 자산 축적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산을 축적할 때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더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상속·증여세의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급부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역세대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든 사회보장급부가 사회보험료로 충당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일정의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속·증여세는 사회보장급부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며 또한 부의 재분배에 의한 사회의 활력 유지 기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가 지속될 경우 상속인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평균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가액이 현재보다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가 극히 일부 재산계층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하는 종래의 입장에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의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증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및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경제 활력과 관련하여 상속·증여세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업의 승계문제일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기업의 승

계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 상속에 대해서는 1) 특별공제 2) 특별공제 이후 자산의 평가에 60%로 평가 3) 납부이연 등으로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일본 역시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1)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2) 토지에 관한 경감조치 3)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감세 등 상속·증여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제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 기업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해 세금의 납부를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5년 동안 분납하거나, 10년 동안 매 6개월마다 1/20씩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상속에 관한 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에 뿌리를 둔 것으로 단순히 잘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제IV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의 증여 결정 요인이 다르며, 그 효과도 달라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이론 및 분석

1. 기존 연구

가. 외국문헌

Joulfaian(2004)은 미국 상속·증여세와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1933~1997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미국 연방세인 이전세(transfer taxes)의 주요 변화를 기술하면서 1993년 이후로 상속과 증여의 법정세율구조가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증여세는 세금을 포함한 액수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표에도 더 높은 실효세부담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제액의 존재로 증여가 상속보다 더 낮은 실효세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oulfaian(2004)의 연구는 시계열자료만이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약간의 제약을 더 가함으로써 분석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본고는 이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Joulfaian(2004)에 의하면 생전증여가액의 대리변수인 증여가액은 [그림 IV-1]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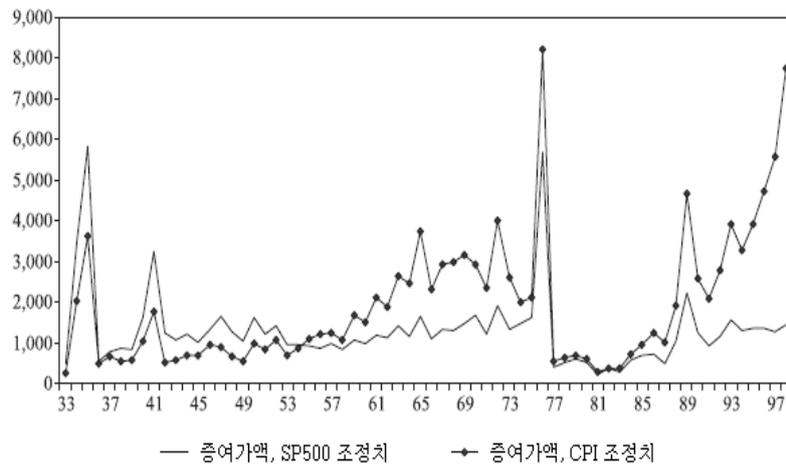
두 가지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1976년까지 증가하다가 조세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급락하였고 조정기를 거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개혁이 진행중이다.

Adams(1978)과 Kuehlwein(1994)의 연구는 상속세 즉 유산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의 실효세부담이 동일하도록 자산

이전행위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고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로는 Adams(1978)는 두 세목의 실효세부담이 동등해짐(equalization)을, Kuehlwein(1994)는 비동등해짐(non-equalization)을 각각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증여세가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과표에 법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동등성 또는 비동등성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의 연구로 돌린다.

[그림 IV-1] 생전증여(1933~1998년)

(1982년 불변가격, 백만달러)



나. 국내문헌

이준규(1996)는 간단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증여공제가 상속공제의 현재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하고 반대로 증여공제가 상속공제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때는 상속이 유리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자율의 변화가 증여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용일(1999)은 증여가액과 상속가액의 비율이 증여공제가액과

상속공제가액의 비율과 누적증여재산가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국세통계연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최명근(2006)은 상속·증여과세 존폐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전통적 과세근거론으로 법이론적 근거로서 (i) 시민법상의 재산상속권을 (ii) 경제이론적 근거로서 회피조세정산설과 응능부담력설을 그리고 (iii) 정책론적 근거로서 출발점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문제, 인적 자본(Human Capital) 비과세에 대한 보완과세, 권력 및 부의 집중억제 등을 설명하였다. 상속과세 폐지 근거론으로 (i) 법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상의 재산상속권을 (ii) 사망세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세금, 사망세의 도덕성 결여, 상속과세는 상징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iii)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iv) 상속과세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저축에 대한 영향과 투자·생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고 (v) 세수의 과소·행정 및 납세순응비용의 낭비에 대해서는 상속과세 세수입의 과소,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과 조세회피비용의 문제, 그리고 상속과세가 다른 세목의 과세보완장치로 작용하는지를 언급하였고 (vi) 부의 집중억제(또는 기회균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천착하였는데, 주요 국가들의 동향 대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캐나다의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대체방식을 자본이득 과세의 구조 및 상속 등의 유사처분 의제방식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유산과세 폐지동향을 설명함으로써 개정 과정의 대강, 최종통과와 그 내용의 대강,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평가도 발표되었는데,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포괄증여 정의 규정에 대한 평가, 포괄증여 개념 정의의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으로서 열거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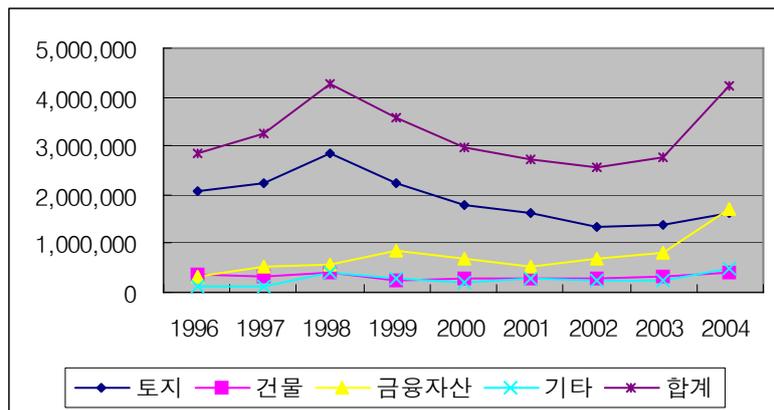
2. 상속·증여행위

가. 자산형태별 이전자산규모

상속재산가액의 재산종류별 과세표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재산종류로는 토지, 건물,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를 들 수 있다.

[그림 IV-2]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1996~2004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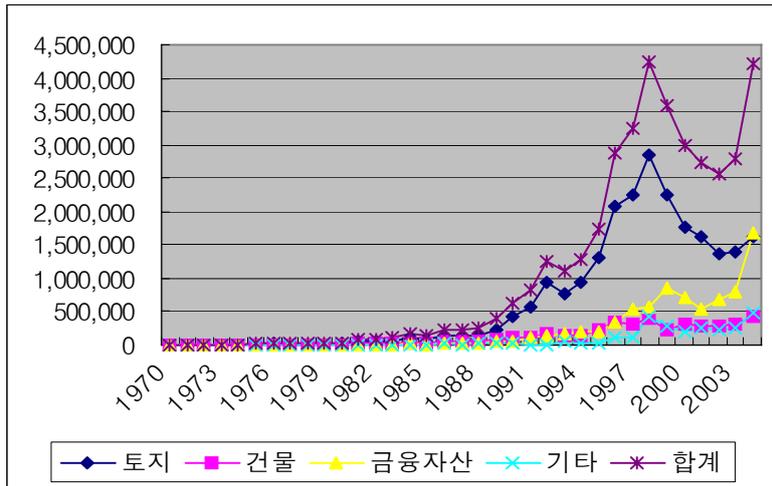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1996년 이후로 토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2004년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토지의 비중을 앞질렀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상속재산으로서의 증가는 고령화, 선진화, 세계화에 기인하며 금융개방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림 IV-3]은 30여년에 걸친 시계열자료로 1990년대 이후로 상속재산가액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개인의 부가 증가하면서 자산의 세대간 이전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증여재산가액의 재산종류별 추이는 다음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2004년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산 증여액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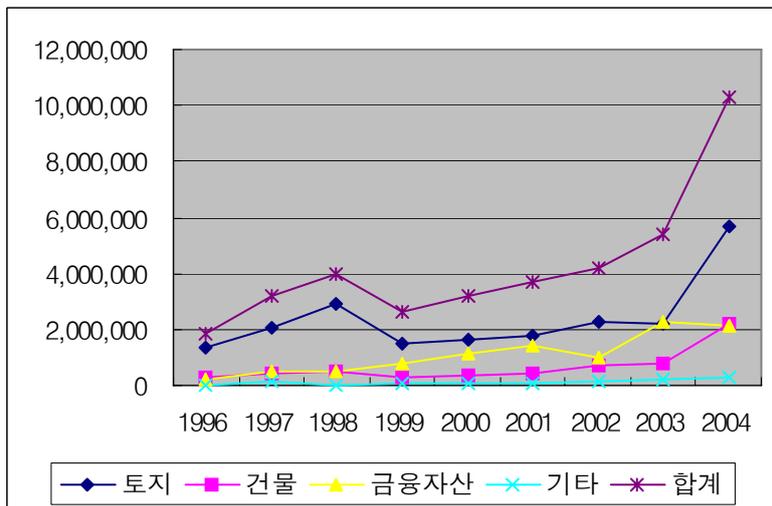
[그림 IV-3]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1970~2004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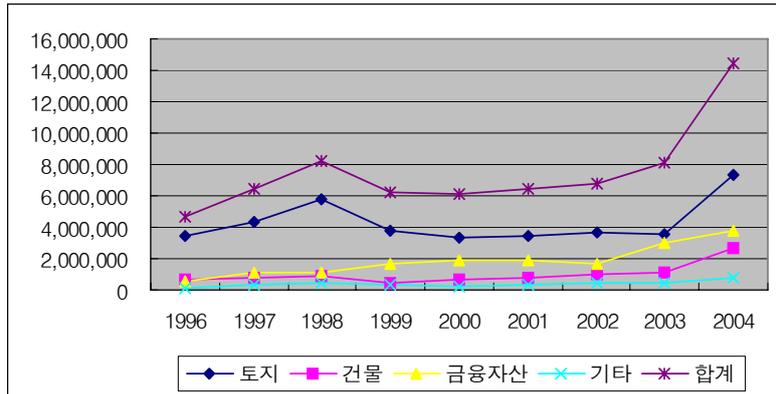
[그림 IV-4] 연도별 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1996~2004년)

(단위: 백만원)



[그림 IV-5] 연도별 재산종류별 이전재산가액(1996~2004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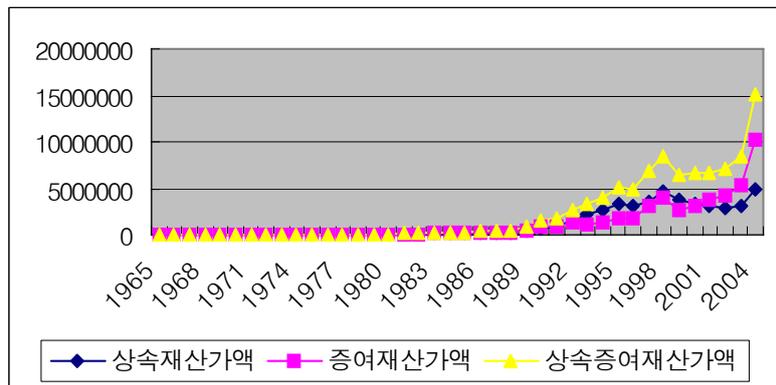


나. 생전증여 비율

다음의 그림은 상속, 증여 각각과 합계의 재산가액을 나타낸다. 상속과 증여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2004년 사이에 하나의 분지를 형성함을 볼 수 있다.

[그림 IV-6] 재산가액: 상속, 증여,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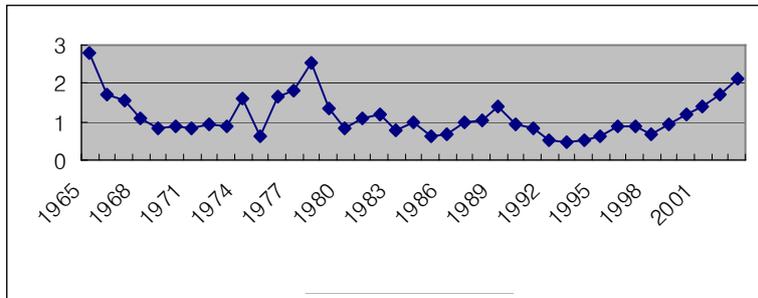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생전증여비율 또는 사전증여비율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다음 그림을 볼 때 일종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부터 비율이 1보다 작다가 2000년부터는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을 주로 하다가 생전증여로 이진행위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진행위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IV-7] 사전증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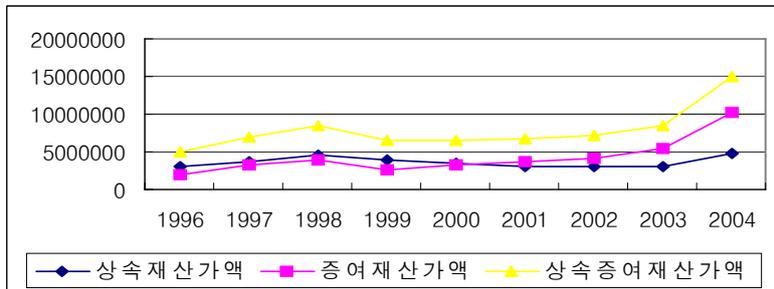
(단위: 무명수)



다음 그림들을 통해 1996년 이후 현재까지의 재산가액과 사전증여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증여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구조가 증여가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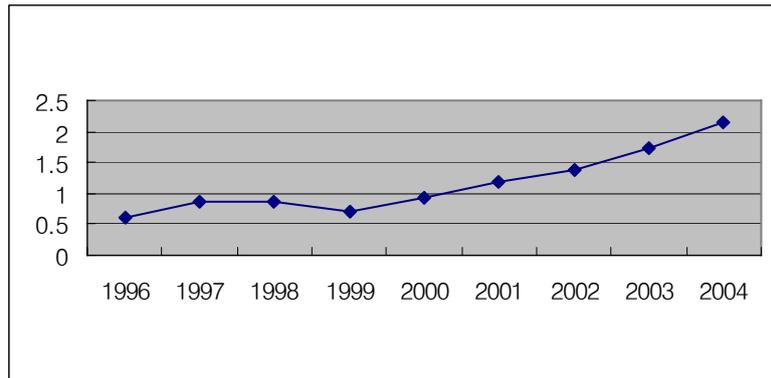
[그림 IV-8] 재산가액: 상속, 증여, 합계(1996~2004년)

(단위: 백만원)



[그림 IV-9] 사전증여비율(1996~2004년)

(단위: 무명수)



3. 자산이전모형

부모가 자녀에게 ‘부의 이전’ (wealth transfer)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 단순한 경제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부가 현금(cash)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부의 형태가 다양하다. 즉, 현금, 예금,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사업장, 토지, 부동산, 채무면제, 부동산무상사용, 현물출자, 전환사채, 주식 등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가능한 부의 시간별 배분에 관심을 갖는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가 생존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증여(gift)를 할 수도 있고 사망하면서 유증(bequeath)할 수도 있다. 또한 사망하면서 상속(inheritance)이 집행될 수도 있다. 간단하게 1, 2, 3의 세 시기가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인 1기에 증여하는 것과 미래인 2기에 증여하는 것과 사망시기인 3기에 상속을 할 수 있다.

부모의 이전시기의 결정에 대한 모형을 현재증여(G_1), 미래증여(G_2), 유증(B)의 세 가지 경제적 재화(economic goods)에 대한

효용극대화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 재화의 구입에 따른 대가를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 가지 시점의 이전을 해야 하는 제약식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부모의 효용함수가 이 세 가지 ‘자녀에게로의 이전’이라는 소비로부터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효용함수 식(1)을 상정할 수 있다.

$$U(G_1, G_2, B) \quad \text{식 (1)}$$

현금 또는 일반적인 경우 부의 현재가치를 w 라고 하자. 현재증여, 미래증여, 유증의 세 재화에 대한 가격은 상속세율(e), 증여세율(g), 이자율(r) 또는 일반적인 경우 부의 평균수익률, 시간할인율(δ) 등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증여의 가격은 $P_1 = \frac{1}{1-g_1}$ 이다. 부모가 현재의 소비재인 1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차감한 $(1-g_1)$ 만큼만 자녀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만약 1원만큼의 현재증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P_1 = \frac{1}{1-g_1}$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현재증여의 현재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이 된다. 증여세율이 50%면, 증여가격은 2가 된다. 이것은 현재 부모가 1원을 증여하고자 하면 2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증여의 가격은 $P_2 = \frac{(1+\delta)}{(1-g_2)(1+r)}$ 이다. 부모가 현재의 소비재인 1원을 저축하면 미래에 $(1+r)$ 원을 얻고 이를 증여하면 $(1-g_2)(1+r)$ 만큼이 자녀에게 미래에 이전되기 때문에, 만약 1원만큼의 미래증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frac{1}{(1-g_2)(1+r)}$ 만큼의 현재소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녀가 받는 미래이전이 모두 자녀의 소비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부모가 시간할인율 δ 로 할인한다고 하자.

이 시간할인율은 현재 $(1+\delta)$ 만큼의 소비가 주관적으로 볼 때 미래의 1만큼의 소비에 해당한다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래증여의 현재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은 $P_2 = \frac{(1+\delta)}{(1-g_2)(1+r)}$ 이다. 3기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상속 또는 사망증여의 (현재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은 $P_3 = \frac{(1+\delta)^2}{(1-e)(1+r)^2}$ 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세 가지 증여의 가격이 주어지면 부모의 예산 제약식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각 시기의 증여에 대한 지출의 합은 현재의 부(W)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자식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적정 선택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부모의 경제행위는 현재증여(G_1)와 미래증여(G_2), 그리고 유증 또는 상속·증여($B = G_3$)의 세 경제적 재화(economic goods)를 상정하여 자신의 예산제약(W)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전자산의 할당 문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begin{aligned} &Max \quad U(G_1, G_2, B) \\ &s. t. \quad P_1 G_1 + P_2 G_2 + P_3 B = W \end{aligned} \quad \text{식 (2)}$$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를 통한 부모의 효용함수를 부모의 예산제약식하에서 극대화하는 위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면, 소위 최적결정의 필요조건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frac{U_1}{U_2} = \frac{P_1}{P_2} \quad \text{그리고} \quad \frac{U_1}{U_3} = \frac{P_1}{P_3}$$

이것은 대표적인 부모가 이전의 시간적 배분에 있어 최적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성립해야 할 조건을 구할 수 있다. 효용극대화 조건의 의미는, 현재시점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증

여가격과 미래시점에서 증여 혹은 상속가격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대표적인 부모가 선택을 고려하는 시점에서의 효용의 한계 대체율과 각 시점에서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자율 또는 일반적인 경우 부의 평균수익률이 시간할인율과 동일하다면($r = \delta$), 상속가격은 $P_3 = \frac{1}{1-e}$ 가 된다. 따라서 위의 균형식을 따르면, 현재증여가격(P_1), 미래증여가격(P_2), 그리고 상속가격(P_3) 각각이 현재증여세율(g_1), 미래증여세율(g_2), 그리고 상속세율(e)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여러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 물론 증여 및 상속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있어서의 시기별 의사결정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의존한다는 기본명제를 유지하면서 확장할 수 있다. 먼저 생존기간이 여럿이어서 증여가 n 개의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절한 분석을 통해 위의 명제가 유지된다. 실제로 사망시기는 불확실하다. 이 경우 각 시기별로 사망확률을 도입하여 적절한 분석을 하면 위의 명제가 유지된다.

분석의 주요 모형은 대표적 자산소유자가 다양한 형태의 자산 다기에 걸쳐 사전증여(inter-vivos transfers) 또는 상속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자산이전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이다.

자산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 각각 적용되는 수익률, 감가상각률, 할인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형이 정교하면서 복잡해진다. 또한 각각 적용되는 조세 세목과 세율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우선, 대표적 경제주체를 가지는 일반균형모형의 최적화 균형식을 도출하여 그 경제적 함의를 밝혀낼 수 있다. 일종의 자산제약식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의 (경제적)가격이 도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균형식으로부터 실증분석을 위한 회귀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는데, 기본모형에서처럼 상속 및 증여의 이전자산가액을 다양한 설명변수를 갖고 회귀분석하여 일종의 탄력성분석을 할 수 있다. 즉, 각 자산별 수익률, 감가상각률, 세율 등과 할인율의 함수로서 상속 및 증여의 이전자산가액이 도출된다.

일반적인 경우로 t 기에 상속 또는 증여를 고려한다고 가정하자. $t+n$ 기에 상속이 이루어질 때 조세가격은 $p_B = \frac{(1+\delta)^n}{(1-e)(1+r)^n}$ 인데, 여기서 e 는 유산세율을, r 은 자산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자산의 수익률이 시간할인율과 동일하다면 ($r = \delta$), 상속의 조세가격은 기본모형의 P_3 와 동일해진다. 증여의 경우 e 를 g 로 바꾸면 된다.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자산의 수익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

4. 부의 이전에 대한 실증분석

가. 자료구축 및 모형설계

실증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적 엄밀성에 기초하여 볼 때, 가장 좋은 데이터는 상속·증여 세무보고자료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장 공식적인 자료인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였는데, 상속세의 경우는 자산별 시계열자료가 1970~2004년이 구축되었고 증여세의 경우는 자산별 시계열자료가 1996~2004년이 구축되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이전자산 규모별 시계열자료가 1995~2004년이 구축되었다.

가설 설정 및 회귀검증에 사용할 다양한 형태의 가설을 기존문헌에서 논의한대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회귀검증 또한 엄밀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Joulfaian(2004) 등에서 파악한 다양한 형태의 가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설정

하였다. 이는 균형식과 가설을 통해 회귀식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자산이전이라는 경제적 행위에 기반을 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자산별 상속·증여세제의 차별적 설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부의 세대간 이전의 두 방식인 증여와 상속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통한 조세정책이 부의 이전을 원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하에서는 먼저 증여세수에 미치는 제 요인들의 영향 정도가 어떠한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과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의 상대적 비율이 제 요인들에 의해 받는 영향의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나. 증여세수 결정요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유사한 법정세율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 조세가 상속과 증여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두 가지 조세가 상이한 영향을 준다. 첫째, 두 조세의 재산공제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유효세율이 상이하어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둘째, 두 조세의 평균유효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도 증여와 상속의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존자 간 증여 (inter-vivo gifts)는 상속에 의한 유산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세대간 경제모형에서 자주 제기되는 바대로 생산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 늙은 세대의 생산자본이 이전됨으로써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에서 제기되는 생산단위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미시단위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거시

적으로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생존자 간 증여 모두가 생산 단위의 이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 간 증여가 세 부담, 경제력 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본절에서는 증여로 인한 세수, 즉 증여세수가 각종 세 부담 및 경제력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증여세수의 각종 탄력성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증여세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들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상속은 미래의 증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의 균형조건에서 도출되었듯이 증여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포함하는 증여가격과 상속가격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증여로 인한 세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증여세 부담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체로 조세의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는 미리 국회(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증여세 부담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세율을 이용한 증여세 부담의 지표로는 법정세율, 한계유효세율, 평균유효세율 등을 들 수 있다. 한계유효세율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대체변수(proxy)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법정세율이다. 하지만 법정세율은 누진적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섯 개가 있다. 각각의 과세구간에서 한계세율로 작용하여 어느 정도 대체변수로 생각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분석의 편리를 위해 최고법정세율을 증여세 부담의 지표로 사용한다. 또한 평균유효세율도 대체변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의 지표로 사용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 소득공제가 다양하고 큰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세 부담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증여 및 상속의 대상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 자료를 이용한다. 기타 이외의 변수들이 증여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한국은행의 소득자료를 추가한다.

증여 및 상속세 등 조세의 과세체계 변화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대체로 다음 기에 세율이 상승할 것인지 혹은 하락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부모를 가정한다면, 현재 기의 증여가격(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다음 기에 증여를 하거나 혹은 상속을 하는 의사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현재 기의 증여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다음 기에 증여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 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한편 향후의 평균적인 상속가격(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이는 현재 기의 증여세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담 및 경제력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어 궁극적으로 증여세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을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한 후 로그를 취하면 다음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GE_t = \alpha + \beta_1 GP_{t-1} + \beta_2 GP_t + \beta_3 GP_{t+1} + \beta_4 BP_{t+1} + \beta_5 SP_t + \beta_6 Y_t + \beta_7 GR_t + \epsi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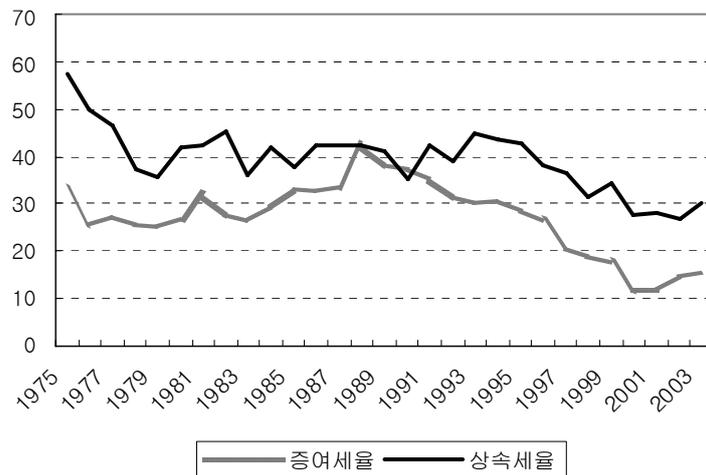
여기서 GE는 실질증여세수의 로그값, GP는 증여가격의 로그값, BP는 상속가격의 로그값, SP는 실질주가지수의 로그값, Y는 실질소득의 로그값, GR은 실질증여공제의 로그값을 의미한다.

통계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시계열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분석대상 기간은 1975년부터 2003년까지이다¹⁷⁾. 분석대상 기간 동안 법정세율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에 각종 면세 및 공제 제도 등으로 평균유효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의 변화가 다음의 [그림 IV-10]과 같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부담 지표로 평균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그림 IV-10] 증여 및 상속세 평균유효세율

(단위: %)



<표 IV-1>은 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증여세수에 이전 기와 현재 기의 증여가격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음 기의 증여가격은 양(+)의 영향을 준다. 즉 다음 기에 증여세율이 증가하여 다음 기의 증여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 기의 증여세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과세체계의 변화는 상당한

17) 조세자료는 1965년부터, 소득자료는 1970년부터 있으나 주가자료가 1975년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다.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전 기의 증여가격이 높았다면 현재 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전 기의 증여가격의 상승은 현재 기의 증여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현재 기의 증여가격 상승에 대해 현재 기의 증여세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각 기의 증여가격에 대한 계수추정치를 보면, 현재 기의 계수추정치 절대치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증여세수의 증여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현재 기가 다른 시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증여가격의 효과가 다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증여세수가 증가, 감소를 반복하면서 그 방향을 예측하기 곤란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증여공제와 법정증여세율의 변화를 주로 하는 증여과세정책의 변화는 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또는 한계유효세율을 변화시킨다. 이는 단기적으로 아주 높은 가격탄력성(15.5)을 갖는다. 그러나 2기에 걸친 장기적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 낮은 수치(5.6)를 나타낸다. 이러한 증여세수의 단기적-장기적 가격탄력성의 차이는 증여세 조세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증여공제액이 증여세수에 주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다. 증여공제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증여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증여공제의 확장으로 인한 증여 동기의 실현화를 가속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증여세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간접적인 가격효과가 직접적인 수량효과를 아우르면서 전반적으로 증여세수를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다음 기의 상속가격, 즉 기대상속가격이 높으면 현재 기의 증여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과 증여가 근본적으로 대체재(substitutes)임을 나타낸다. 주가지수의 경우,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증여하려는 재산 가액이 증가하여 당연히 증여세수가 늘어날 것이며, 추정결과도 계수추정치가 양(+)의 수치를 보였다. 국민소득, 즉 GDP가 증여세수에 주는 영향은 음(-)의 수치를 보였다.

<표 IV-1> 증여세수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t-통계량
상수항	3.778253	5.648527	0.668892
log(GP, t-1)	-3.030469	3.904058	-0.776236
log(GP, t)	-15.46840	6.024012	-2.567790
log(GP, t+1)	9.849940	4.547655	2.165939
log(BP, t+1)	-2.897456	1.850586	-1.565697
log(SP, t)	0.195834	0.298772	0.655461
log(Y, t)	-1.048144	0.680627	-1.539968
log(GR, t)	1.844086	0.299453	6.158174

주: 1. R-squared: 0.947606
 2. Adjusted R-squared: 0.929269
 3. Durbin-Watson stat: 1.992073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증여세수는 증가와 감소가 빈번하여 그 변화를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할 수도 있다. 제 경제 변수들의 현재 기와 다음 기의 차분(difference)을 새로운 변수로 정의하여 앞에 d 를 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차분을 이용한 차분 변수 다중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dGE_t = \alpha + \beta_1 dGP_{t-1} + \beta_2 dGP_t + \beta_3 dGP_{t+1} + \beta_4 dBP_{t+1} + \beta_5 dSP_t + \beta_6 dY_t + \beta_7 dGR_t + \epsilon$$

다음의 <표 IV-2>는 평균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증여가격, 상속가격의 차분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그 결과 대체로 수준(level)변수를 이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예상과도 대체로 부합되었다. 특히 증여가격에 대한 증여세수의 반응은 이전결과와 유사하게 현재 기에 가장 크게 반응하였으며, 다음 기의 상속가격에 대해서는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표 IV-2>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t-통계량
상수항	-0.190561	0.328696	-0.579749
d log(GP, t-1)	-8.406764	5.628178	-1.493692
d log(GP, t)	-19.46426	6.570831	-2.962221
d log(GP, t+1)	8.536775	5.688962	1.500586
d log(BP, t+1)	-3.327737	2.162279	-1.538995
d log(SP, t)	0.620687	0.691193	0.897994
d log(Y, t)	0.555249	4.265159	0.130182
d log(GR, t)	2.139448	0.357915	5.977528

주: 1. R-squared: 0.730937
 2. Adjusted R-squared: 0.631809
 3. Durbin-Watson stat: 2.601558

이상의 분석은 상속세수 및 상속세수 변화에 대한 추정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Joulfaian(2004)은 1933년에서 1998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증여세수 변화를 회귀분석하였다. 모형 (1)과 (2)는

추정세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 (3)과 (4)는 최대세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형 (2)와 (4)는 조세개혁이 이루어진 1989년의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한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도 우리나라 유사하였다. 증여가격의 변화에 대한 증여세수의 반응은 현재 기에 가장 크게 반응하였으며, 다음 기의 상승가격에 대해서는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표 IV-3> 미국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1933~1998년)

	(1)		(2)		(3)		(4)	
	계수 추정치	표준 편차						
상수항	0.0373	0.0741	0.0354	0.0759	0.0259	0.0750	0.0235	0.0765
d log(GP, t-1)	2.2655	1.5242	-2.2092	1.5833	-2.9106	1.5768	-2.9053	1.5908
d log(GP, t)	-14.3710	2.9029	-14.4806	3.0196	-11.1179	2.7323	-11.1696	2.7674
d log(GP, t+1)	13.1663	2.5978	13.4291	3.1577	11.2982	2.3904	11.5474	2.6891
d log(BP, t+1)	-	-	-0.2568	1.7204	-	-	-0.1633	0.7797
dummy 1989	0.7267	0.2954	0.7270	0.2981	0.7224	0.2950	0.7232	0.2976
d log(SP, t)	0.2460	0.3796	0.2398	0.3853	0.3684	0.3753	0.3591	0.3812
d log(Y, t)	0.4365	1.4101	0.5123	1.5108	0.1001	1.3344	0.1456	1.3637
d log(e, t)	0.1170	0.4018	0.1326	0.4186	0.1632	0.4038	0.1746	0.4110
d log(GR, t)	-0.4514	0.3430	-0.4290	0.3772	-0.9808	0.3023	-0.9768	0.3055

모형 (1)과 (2)는 추정세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3)과 (4)는 최대세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형 (2)와 (4)는 조세개혁이 이루어진 1989년의 연도더미변수이다.

다. 생전증여비율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증여·상속의 세수비중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중요한 발견은 증여와 상속의 최고법정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이 매우 유사하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발생한 증여·상속의 세수비중의 역전현상은 상당히 드라마틱하여 이를 하나의 역설로 볼 수 있다. 이론모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여와 상속이 상호보완성을 갖는다면 이러한 역설의 근본원인은 증여·상속의 상이한 공제범위와 공제액수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가 세법개정시 빈번하게 변경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도별로 상속 및 증여의 상대적 세부담은 상이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증여자의 증여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준규(1996)는 증여공제가 상속공제의 현재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하고 반대로 증여공제가 상속공제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때는 상속이 유리하다고 이론적 논리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자율의 변화도 상속 및 증여공제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여 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증여의 경우 현재 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하지만, 상속은 미래 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납부와 미래 시점에서의 상속세 납부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상속세의 현재가치는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증여세 부담은 증가한다. 즉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에 비해 증가하므로 증여 동기는 감소할 것이다.

박용일(1999)은 증여가액과 상속가액의 비율이 증여공제가액과 상속공제가액의 비율과 누적증여재산가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국세통계연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증여세 과세체계가 앞서 보았듯이 과거 일정기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을 합산¹⁸⁾하여 누진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대상기간 이내에 증여가액이 많을수록 당해 연도의 증여 동기가 줄어들 것이다.

이하에서는 생존자 간 증여의 생애증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로 상속재산가액 대비 증여재산가액의 상대적 증여비율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증여동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증여공제 비율(증여공제가액/상속공제가액), 이자율, 재차증여가액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한다.

$$GBR = \beta_0 + \beta_1 GBDR + \beta_2 \ln(CUMG) + \beta_3 R + \beta_4 \ln(Y) + \epsilon$$

여기서, $GBR = \frac{\text{증여재산가액}_t}{\text{상속재산가액}_t}$, $GBDR = \frac{\text{증여공제가액}_t}{\text{상속공제가액}_t}$,
 $CUMG = \text{재차증여가액}_t$, $R = \text{이자율}_t$, $Y = \frac{\text{일인당명목GDP}_t}{\text{GDP디플레이터}_t}$ 을 의미한다.

증여공제가액이 상속공제가액보다 증가하면 증여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므로 상대적 증여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이자율이 증가하면 상속세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상속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 증여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재차증여가액은 많을수록 당해연도의 증여가액은 감소할 것이므로 상대적 증여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한편 이외의 기타 변수들이 증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인당 실질GDP를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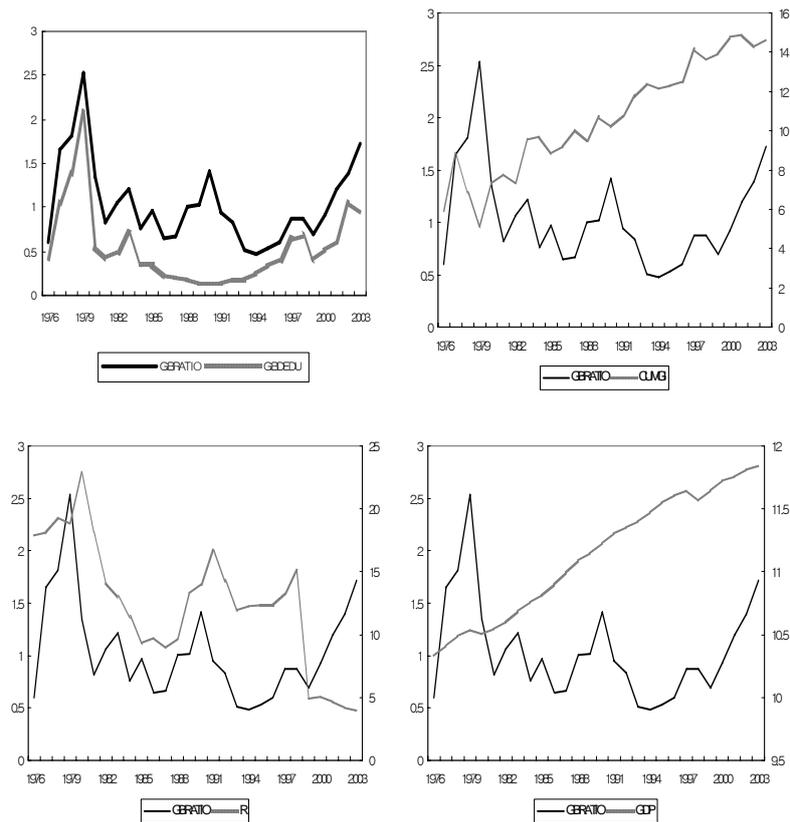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표 IV-4>와 같다. 분석대상 기간은 1976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상속 및 증여세 관련자료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자율 및 인구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GDP와 GDP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다.

18) 이와 같은 증여가액을 재차증여가액이라고 한다.

<표 IV-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상대적 증여비율	상대적 증여공제비율	ln(채차증여 가액)	이자율	ln(1인당 실질GDP)
평균	1.04	0.54	10.67	12.49	11.13
중위수	0.94	0.41	10.43	12.69	11.18
최대값	2.53	2.09	14.86	22.85	11.84
최소값	0.48	0.13	5.11	3.97	10.33
표준편차	0.47	0.44	2.85	5.01	0.49

[그림 IV-11] 상대적 증여비율과 설명변수 간의 추이 비교



다음으로 상대적 증여비율과 각 설명변수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V-11]과 같다. 상대적 증여비율과 상대적 증여공제비율의 추이는 유사하나, 재차증여가액과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자율은 대체로 상대적 증여비율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이는 앞서 설명한 가설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5>는 상대적 증여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상대적 증여공제비율의 계수추정치는 0.871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공제가액이 상속공제가액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할 경우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재차증여가액의 계수추정치는 -0.057로, 재차증여가액이 증가하면 증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일치되나 t-통계량이 작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도 -0.004로 나타나 이자율이 증가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의 현재가치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증여세보다 상속세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부합되는 결과를 보이나,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박용일(1998)과 거의 유사하다.

<표 IV-5> 상대적 증여비율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t-통계량	P-유의확률
상수항	-0.941	3.366	-0.280	0.782
상대적 증여공제비율	0.871	0.121	7.176	0.000
ln(재차증여가액)	-0.057	0.063	-0.907	0.374
이자율	-0.004	0.015	-0.249	0.805
ln(1인당 실질GDP)	0.195	0.353	0.552	0.587

라. 일본 실증분석

본 소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하였던 앞의 분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정식을 추정하여 일본의 상속·증여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증여세수 분석

증여세수를 결정하는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¹⁹⁾.

$$GE_t = \alpha + \beta_1 GP_{t-1} + \beta_2 GP_t + \beta_3 GP_{t+1} + \beta_4 BP_{t+1} + \beta_5 SP_t + \beta_6 Y_t + \beta_7 GR_t + \epsilon$$

여기서 GE는 증여세수, GP는 증여재산가격, BP는 상속재산가격, SP는 주가지수, Y는 소득, GR은 증여공제를 나타낸다.

분석에 사용하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데이터는 『국세청통계연보²⁰⁾』에서 구하였으며, 주가지수는 일본 TOPIX²¹⁾ 연간 평균지수를 사용하였다. 소득으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탄력성을 바로 구하기 위해 모든 변수에 로그를 취하였다. 추정은 OLS로 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은 1970년에서 2003년까지이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9) 본절에서 사용하는 추정방정식은 모두 우리나라를 분석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추정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앞 장의 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단, 추정식은 동일하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사용하는 설명변수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20) 일본 국세청 홈 페이지 <http://www.nta.go.jp> 참조.

21) 동경증권거래소가 산출, 공표하는 주가지수

<표 IV-6> 증여세수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p-value
상수항	-3.5936	1.6865	0.044
log(GP, t-1)	0.0100	0.1967	0.096
log(GP, t)	2.0838	0.4162	0.000
log(GP, t+1)	0.00002	0.1971	1.000
log(BP, t+1)	0.3349	0.3509	0.349
log(SP, t)	0.0980	0.1435	0.501
log(Y, t)	-1.7731	0.3818	0.000
log(GR, t)	-0.8041	0.2829	0.009

주 : 1. Adj R-sq: 0.9466

추정결과 당기의 증여재산가액(GPt)과 실질소득(Y), 그리고 증여공제(GR)가 증여세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이 증여세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추정된 결과와 같으나,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공제가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가액 및 주가지수는 증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당기의 증여세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것이나,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치추정량이 얻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의 증분을 취하여, 즉 종속변수로 증여세수의 증분²²⁾을, 설명변수도 각각의 증분을 취하여 각각의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였다 (<표 IV-7> 참조). 추

22) $d \ln GE(t) - d \ln GE(t-1)$

정결과 증여재산가액의 증분만이 증여세수의 증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여공제액의 증분이나 실질소득의 증분은 증여세수의 증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p-value
상수항	-0.0540	0.0328	0.113
d log(GP, t-1)	-0.1032	0.1550	0.512
d log(GP, t)	1.5112	0.3845	0.001
d log(GP, t+1)	-0.0728	0.1402	0.608
d log(BP, t+1)	0.3092	0.3430	0.377
d log(SP, t)	0.0717	0.1029	0.493
d log(Y, t)	0.5049	1.1269	0.143
d log(GR, t)	-0.3900	0.2575	0.113

주 : 1. Adj R-sq: 0.8950

2) 증여/상속의 세부담 비율과 증여·상속의 선택

[그림 IV-2] 및 <표 IV-2>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증여와 상속은 그 재산가액 및 세액에서도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여와 상속은 정의상 자산의 이전 시기가 다를 뿐, 즉 미래에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현재에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가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²³⁾. 그러나 상속이 미래의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증여는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경

23) 물론 부모의 예기하지 못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증여와 상속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추정하기로 한다.

$$GBR = \beta_0 + \beta_1 GBDR + \beta_2 \ln(CUMG) + \beta_4 R + \beta_5 \ln(Y) + \epsilon$$

$$\text{여기서, } GBR = \frac{\text{증여재산가액}_t}{\text{상속재산가액}_t}, \quad GBDR = \frac{\text{증여공제가액}_t}{\text{상속공제가액}_t},$$

$CUMG = \text{누적증여가액}_t$, $R = \text{이자율}_t$, $Y = \frac{\text{일인당명목GDP}_t}{\text{GDP디플레이터}_t}$ 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가운데 누적증여가액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는 앞 장의 우리나라의 실증분석과 같다. 앞 장의 분석에서는 누적증여가액 대신 재차증여가액을 사용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재차증여가액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박용일(1999)의 방법론에 따라 과거 4년간의 누적증여가액을 설명변수로 대신하였다. 이자율은 일본은행의 재할인율(official discount rate)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상대적 증여비율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p-value
상수항	0.3496	0.1580	0.035
GBDR	0.0167	0.0057	0.007
CUMG	-0.0013	0.0236	0.958
R	0.0020	0.0030	0.518
Y	-0.0673	0.0369	0.078

추정결과를 보면 공제비율(GBDR)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침체된 현재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증여

를 권장하려고 한다면 다른 요인보다도 증여세의 공제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 시사점 및 한계

본장에서는 그간 간과되었던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함으로써 상속·증여세의 향후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을 도입하고, 그로부터 증여·상속의 기회비용으로서의 가격에 증여·상속의 평균유효세율이 다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증여의 경우를 들어 세수와 세수의 변화, 그리고 재산가액의 비중을 유의미한 경제변수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한 분석을 행할 수 있음도 적기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모든 부가 현금인 경우를 상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부의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향후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모형을 통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물론 각종 자산이나 부를 도입하더라도 증여와 상속의 기회비용으로서의 가격이 다기간에 걸친 증여의 균형수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증여세가 증여나 상속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장의 분석은 현실 정책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증여·상속이 다기간에 걸친 의사결정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세수에 대한 효과에서 단기효과만이 아니라 장기효과를 중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1975년 이후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수의 증여가격 탄력성이 단기에는 15.5의 높은 수치를, 장기에는 5.6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법정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시장에서의 증여가격을 변화시킴을 볼 때, 이러한 단·장기 탄력성 비교 결과는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반응이 매우 탄력적이고 또한 장기적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

둘째, 상속과 증여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증여·상속의 이전비중에 각종 증여·상속의 재산공제의 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각종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부의 무상이전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상속세수보다 증여세수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도 동일한 근거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상속·증여부문의 조세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상속세 세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미국에서 주로 요구되는 것은 그 형태를 떠나 예측가능한 상속·증여세의 설계이다.

셋째, 포괄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정책은 다른 주요 세목의 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를 결정하는 세목에 대해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의 하나로서 상속·증여세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세대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세대의 자산관리 양상이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각종 공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부모세대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비와 자녀세대로의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가 부의 이전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주요 변화를 인지하면서 상속·증여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학계에서 제기된 개선방향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중간에 위치한 상속·증여세의 특징 때문에 소득과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실효세율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 행위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 설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유산과세형을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장형 과세의 하나로 실행된 기업상속제도의 공제액 인상, 연부연납기간의 연장, 그리고 한시성의 제거 등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으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유산취득세형과 유산세형, 그리고 많은 변형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세부담지표를 계산하고 자산이전행위의 세부담 탄력성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탄력성을, 장기적으로는 더 낮은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 차이점이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관측된 연도의 거시경제적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지는 차후의 연구로 돌린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상이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데에 유의할 몇 가지 점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GDP대비 세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전이전비율은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볼 때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구조는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유의하여 실효세율구조를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조세구조(tax mix)가 향후 완성된다면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의 회박성과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환경의 급변성은 향후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산세형의 유지 또는 유산취득세형으로의 변화, 상속세의 완화 방안으로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증여세와 소득과세의 형평성, 생애에 걸친 과세체계의 확립 등 많은 사안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과세자료의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연방정부와 재계의 득과 실을 계산하고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상속·증여과세의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영·김선득,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4권 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4. 9. pp. 1~18.
- 김유찬, 「독일의 상속·증여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포괄주의 개념의 도입 및 기업상속에 대한 공제의 확대」, 『재정포럼』, 2003년,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세대간 자산이전 모형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9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pp. 6~31.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용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변화가 증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12호, 산국산업경제학회, 1999, pp. 309~322.
- 성낙인·박정훈·이창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법학연구소,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2003. 10.
- 이준규,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무계획」, 『한국조세연구』, 11호, 한국조세학회, 1996, pp. 271~296.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최명근,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 한상국, 「한국조세의 이해-재산과세(Ⅲ): 상속세 및 증여세」, 『재정포럼』, 10월호, 한국조세연구원, 1998, pp. 46~52.
- 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 國稅廳, 『平成14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2002
- 佐藤慎一, 『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04
- 税制調査會, 「平成17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2004
- 税制調査會, 「平成15年度における税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て」, 2002
- 税制調査會, 「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た基本方針」, 2002
- 税制調査會, 「わが國税制の現状と課題—21世紀に向けた國民の参加と選擇—」, 2000
- 中村實, 「少子高齢化時代に對応した相續税のあり方」, 『知的資産創造』 11月号, 2003
- 松田淳・松崎啓介, 『税法便覧』, 稅務研究會出版局, 2005
- 安島和夫, 『相續税法—理論と計算』, 稅務經理協會, 2005
- Bernheim, B. D. and Robert J. Lemke and John karl Scholz,
“Do estate and gift taxes affect the timing of private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 2617~2634.
- Constantinides, G. and John B. D. and Rajnish Mehra,
“Junior is rich: Bequests as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11122, 2005.
- Gale and Slemro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Overview,” NBER 8205, 2001

- Joulfaian, D., "Choosing between gifts and bequests: How taxes affect the timing of wealth transfers," NBER Working Paper 11025, 2005.
- Joulfaian, D., Gift taxes and lifetime transfers: time series evid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917-1929.
- Joulfaian, D., "The distribution and division of bequests: evidence from the collation study," OTA paper 2004, pp. 1971~1929.
- Joulfaian, D., "The federal estate and gift tax: Description, profile of taxpayers, and Economic consequences," OTA Paper 80, 1998.
- Joulfaian, D. and Mark Rider, "Tax evasion by small business," OTA Paper 77, 1998.
- Kaplow, L.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 and gift taxation," NBER Working Paper 7775, 2000.
- Nakagami, Yasuhiro and Alfredo M. P., "Housing costs and bequest motiv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33, 1993, pp. 68~75.
- Poterba, J., "The estate tax and after-tax investment returns," NBER Working Paper 6337, 1997.
- Poterba, J., "Estate and gift taxes and incentives for inter vivos giving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6842, 1998.
- Poterba, J. M.,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taxing estates and unrealized capital gains at the time of death," NBER Working Paper 7811, 2000.
- Rivers, R. and D. Larry C., "The timing problem for the

unified estate and gift tax,”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6, 1979, pp. 125~138.

Schupp, Jürgen & Szydlík, Marc., Inheritance and gifts in Germany, *Economic Bulletin*, Vol. 41, 2004, Issue 3

<국문요약>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김 진 · 원종학

본 보고서는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함으로써 상속·증여세의 향후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을 도입하고, 그로부터 증여·상속의 기회비용으로서의 가격에 증여·상속의 평균유효세율이 다기간에 걸쳐 영향을 줌을 도출하였다. 또한 증여의 경우를 들어 세수와 세수의 변화, 그리고 재산가액의 비중을 유의미한 경제변수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현실 정책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증여·상속이 다기간에 걸친 의사결정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세수에 대한 효과에서 단기효과만이 아니라 장기효과를 중첩적으로 고찰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1975년 이후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수의 증여가격 탄력성이 단기에는 15.5의 높은 수치를, 장기에는 5.6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법정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시장에서의 증여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단·장기 탄력성의 비교 결과는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반응이 매우 탄력적이고 또한 장기적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

둘째, 상속과 증여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증여·상속의 이전비중에 각종 증여·상속의 재산공제의 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각종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부의 무상이전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상속세수보다 증여세수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는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동일한 근거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상속·증여부문의 조세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포괄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정책은 다른 주요 세목의 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를 결정하는 세목에 대해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의 하나로서 상속·증여제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세대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세대의 자산관리 양상이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각종 공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부모세대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비와 자녀세대로의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가 부의 이전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주요 변화를 인지하면서 상속·증여 부문의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Jin Kim · Jonghak Weon

We examine the effects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upon the economic behavior of asset transfers among generations, which has recently shown an increasing trend. We introduce a multi-stage decision model of transferring monetary and real assets among generations, formalize the ratio of the effective average gift tax rates over inheritance tax rates as the opportunity cost of inter-vivos gift choice relative to inheritance bequeath choice, and highlight the meaningfulness of tax rate change into gift-inheritance mix in asset transfer decisions.

There ar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irstly, because of the inter-temporal structure of asset transfers, we find that the effect of the tax ratio between gift and inheritance tax is meaningful not only in the short run but also in the long run.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from the data in 1975-2005 period, the elasticity of gift tax revenue with respect to gift price is 15.5 in the short run and 5.6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market response to

the government policy on inter-generation transfers, is high and lasting.

Secondly, tax reduction ratio between gift and inheritance tax is remarkable to explaining the change of asset transfer from inheritance to gift. That is very important to policy makers' designing tax structure of transfer taxes.

Finally, we report that not only micro tax policies but also macro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re important to explaining the recent trend of gift and inheritance taxes revenue.

<著者略歴>

김 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6-15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2006년 12월 22일 인쇄
2006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김 진·원종학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47-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